

# 선원상담사례집

2nd edition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 발간사 Preface



## 김두영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

2018년도에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이 발간되었습니다. 2년동안 상담이 진행된 사례 중 공유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2020년도에 2<sup>nd</sup> edition을 발간하였습니다.

Edition의 번호가 3,4,5...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충을 해소하고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이 계속해서 있어야 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 한 켠에는 선원들의 고충이 감소되어 더이상 ‘선원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상담이 없어지기를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원들의 권익과 해기전승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의 편찬이 선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부족한 내용에 대한 개선의견은 소중히 여겨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규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의장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소위에서 선원들의 고충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상담인들의 사례를 꽤나 시간이 지나 다시 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진행되었던 일들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이 컸기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깊이와 넓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기억에 남습니다. '선원 상담사례집' 2<sup>nd</sup> edition이 그렇기를 희망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상담을 하고 문의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기 까지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는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과 걸음걸이가 되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 두근혁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한자로 상담(相談)은 ‘서로 상’, ‘이야기 담’으로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교제하며, 온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원의 의미와 같이 서로 간에 그렇게 남길 고대합니다.



## 최종택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상병의 치유 과정과 다르게, 고충의 치유 과정은 더욱 더 복잡하고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야 함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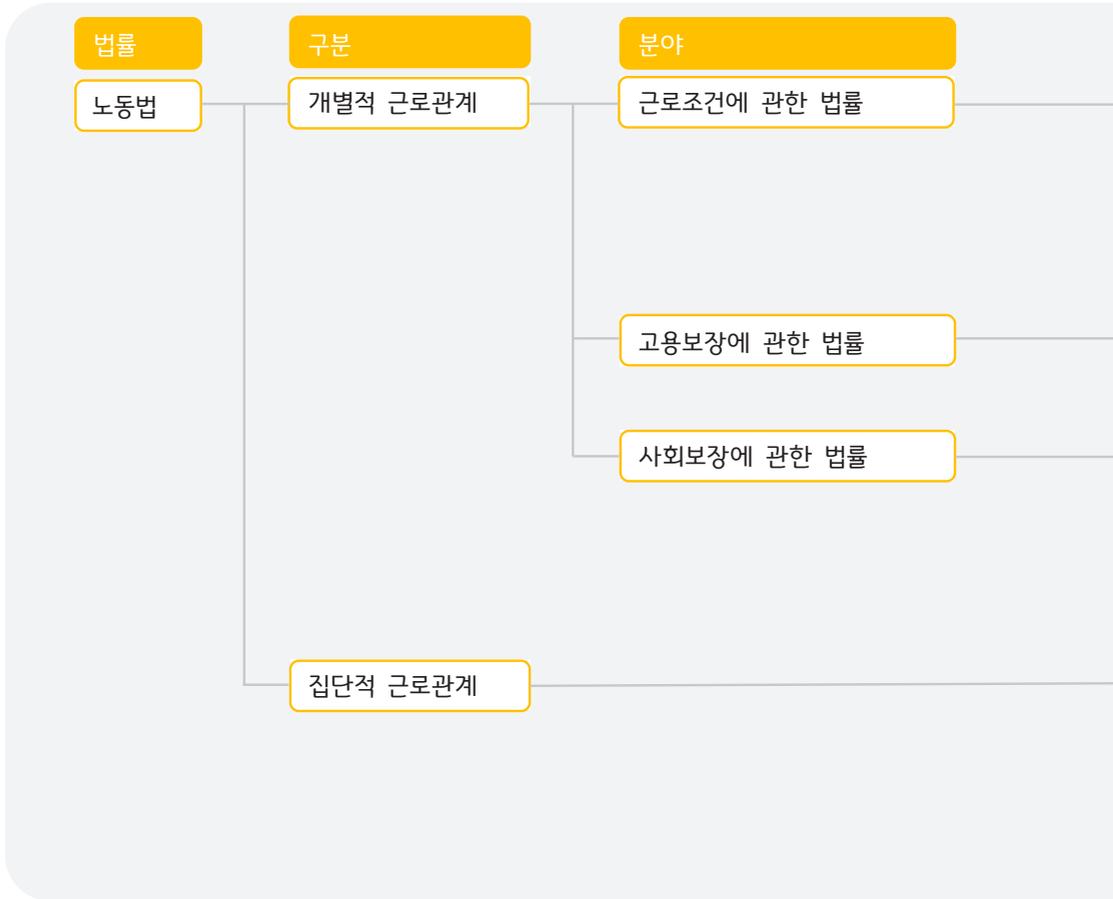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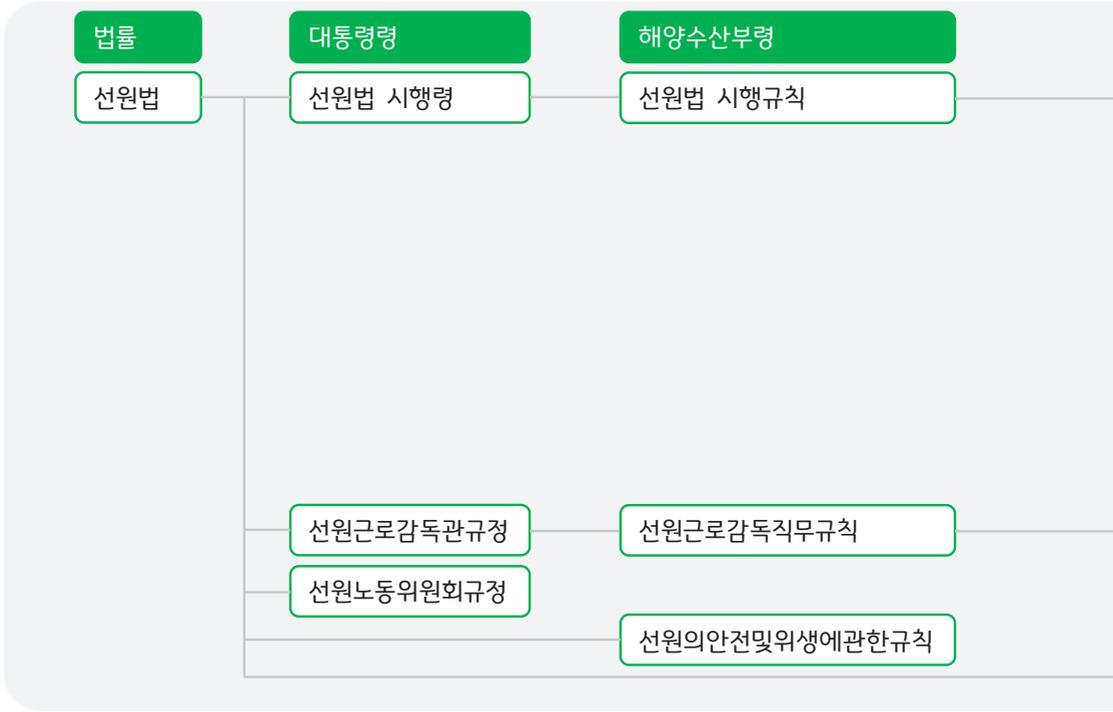


## 황태욱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018년도에는 1<sup>st</sup> edition, 2020년도에는 2<sup>nd</sup> edition으로 선원상담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선원상담사례집 책자의 제본이 마무리가 되듯이 상담 받은 모든 분들의 고충들이 해소가 되고 궁금했던 문의사항들에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졌기를 희망해 봅니다.

# 관련 법령 Related Laws



## 행정규칙

선원업무 처리지침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운영 및 관리에 관한규정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선원업무 처리지침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법률

근로기준법, 선원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직업안정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해양항만관청

**심의대상**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진정. 직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 금액의 결정 및 재해보상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

**관련법령**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구비서류** 진정서, 고소·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정보출처** 선원법위반신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2.10접속, [http://www.portbusan.go.kr/content/contentView.do?MENU\\_ID=M0000083](http://www.portbusan.go.kr/content/contentView.do?MENU_ID=M0000083)

선원노동위원회

**위원회란** 선원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운영.

**심의대상**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휴직, 정직, 감봉 또는 징벌 당한 경우에 구제신청,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나 중재를 청구, 해양항만관청의 지정 기간 (1개월) 내에 심사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 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노동위원회규칙.

**정보출처** 선원노동위원회구제신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2.10접속, [http://www.portbusan.go.kr/content/contentView.do?MENU\\_ID=M0000086](http://www.portbusan.go.kr/content/contentView.do?MENU_ID=M0000086)



구분	내용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변호사, 노무사 등),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명령 신청서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전까지),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조사개시	조사관 지정 /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 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 제척, 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
선원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심문일정 통보 (노동위원회-신청인) / 심문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심문회의 참석자명단 제출 (신청인-노동위원회) /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판정서 통보	판정결과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노동위원회-사용자) / 30일 이내에서 이행기한을 명시

4

**선원법**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1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2  
뇌혈관질환  
재해보상 기간  
출퇴근재해  
구직 및 구인

70

**선박직원법**

음주운항 처벌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90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진료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내용  
재난적 의료비

138

소득세법

실업수당 소득구분  
국외근로자 해당여부

1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174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료 환급

186

병역법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1	06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2	18
뇌혈관질환	30
재해보상 기간	40
출퇴근재해	46
구직 및 구인	62



● **01** 선원법

Seafarers' act

02

03

# 1

##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I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75page : 재해보상 일반사항

087page : 직무상 재해의 범위



### 중요사항

뇌혈관, 심혈관 질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고  
시개정 내용 이해



### 상담내용

뇌종양, 뇌혈관 질병도 산업재해로 판정을  
받아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관계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 고시개정내용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2018.1.1][고용  
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12.29, 일부개정]

# 중요사항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관계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고혈압과 같이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판례가 있음.

## 직무수행성, 직무기인성

직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직무수행성), 직무에 기인하여(직무기인성)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뇌혈관과 심혈관 관련하여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참조.

##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8.1.1][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 12.29, 일부개정]

## 산업재해 용어정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는 ‘산업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함.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함.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됨.

여기서 ‘산업재해’는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선원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선원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됨.



선원에게 적용이 되는 「선원법」의 재해보상 규정은 해상에서 노동을 하는 선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과 유족의 손해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106조를 통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해당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을 선원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산재보험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하는 사업장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적용대상별 업무상 재해 적용법 규정

선원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구분됨.

대상	적용 법 규정
육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	선원법 재해보상
선원 (해외취업선원)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선원 (원양어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의 의의** 해상에서 제공되는 선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선원과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선원들의 손해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임.

**특징**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과는 달리 선원보험은 직무상의 재해 외에도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일정부분에 한해 손해를 보상함.

### 선원법상 선원보험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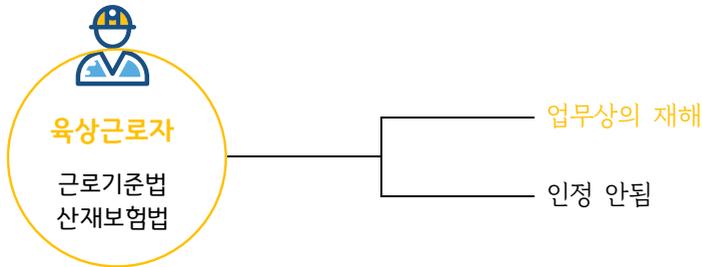
항목	선원법
유기구제보험	제42조의2
임금채권보장보험	제56조
요양보상	제94조
상병보상	제96조
장해보상	제97조
일시보상	제98조
유족보상	제99조
장재비	제100조
행방불명보상	제101조
소지품유실보상	제102조

### 선원보험의 강제가입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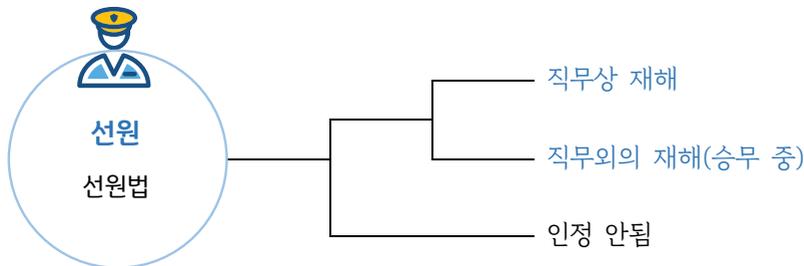
「선원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에게 해당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함.

## 산재보험법, 선원법 차이

산재보험법		선원법	
요양급여	직무상 재해시 요양비 전액지급	요양보상	직무상 또는 직무외 질병·부상에 대한 필요비용 지급
휴업급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병보상	- 직무상 부상·질병 : 4개월까지는 100% 통상임금, 4개월 이후 치유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70% 지급 - 직무외 부상·질병 :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장해보상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유족급여	연금이나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	- 직무상 사망 : 1300일분의 승선평균임금 - 직무외 사망 : 1000일분의 승선평균임금
상병보상 연금	요양개시후 2년 경과부터 제66조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일시보상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법상의 제1급(1,474일) × 승선평균임금 지급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제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간병급여	요양 받는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지급	행방불명 보상	통상임금 : 1개월분 승선평균임금 : 3개월분
특별급여 제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제도	소지품 유실보상	통상임금의 2개월분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육상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함.



선원 재해에 대한 보상은 ‘직무상 재해’ 또는 ‘직무 외의 재해(승무중)’로 구분하여 지급의 범위를 달리 하며 보상금액과 기간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 ‘직무상 재해(직무상의 사유에 의한 선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직무상 재해와 직무외의 재해 구별기준

선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직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직무상과 직무 외로 구분이 되며 그에 따른 보상금액과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 요건의 충족 여부임.

### 직무수행성

재해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 작업행위, 다른 선박의 구조행위 및 기항지에서의 물품구입 행위나 적·양하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과 작업준비시간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기인성

재해가 선원의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

문제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문제된 직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부상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입증책임** 해당 선원은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 즉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음.

## 고시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가 2017년도 개정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로기준시간 3단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시간 산정 시 30% 가산(감시·단속 근로자 제외), 업무강도·책임 등 업무환경 비교 시 동종 노동자 비교 삭제 등으로 개정됨(시행 2018.01.01).

### 만성과로관련 업무시간 인정기준 완화

- 발병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업무관련성 강하다 평가
-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되면 업무관련성 강하다 평가
-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 시 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산출

### 세부내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8.1.1][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12.29, 일부개정]

####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II. 재검토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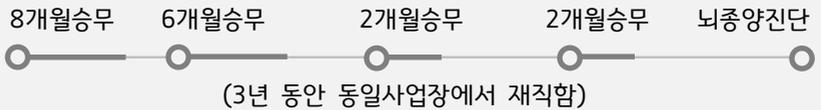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담내용

##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3년 동안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4척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함. 3번째 선박에 승무 중 어지러움증으로 2개월만에 하선하여 여러병원에서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소견을 받지 못함. 4개월의 휴가 후 4번째 선박에 승선을 하였으나 어지러움증으로 2개월만에 하선하여 검진을 받음.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되어 수술과 입원 치료함.

## 재직기간



## 질문

뇌종양과 뇌혈관 질병도 산업재해로 판정을 받아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는 ‘산업재해’로서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재해로 판정을 받아야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범위, 기간 및 금액의 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데, 육상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며 선원에게 적용이 되는 법에는 선원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육상근로자와 선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듯이 용어와 적용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육상근로자에게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상의재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나 선원인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직무 외의 재해(승무중)’로 사용이 됩니다.

상담인은 선원에 해당되므로 선원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원법에서는 직무상과 직무 외로 구분이 되며 그에 따른 보상금액과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직무수행성’이란 재해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직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선원의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선원은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을 입증하여야 만이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종양과 뇌혈관 질병인 경우에는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인정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

##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II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75page : 재해보상 일반사항

087page : 직무상 재해의 범위

092page : 요양의 범위



### 중요사항

증상이 노화가 되어 발생하는 퇴행성병변인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상담내용

기관설비 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지만 퇴행성병변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함

## 관계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판례

대법원 2001.11.17. 선고 2000두2242 판결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 중요사항

## 퇴행성병변

세포 및 조직은 여러가지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기능저하를 나타내는 형태 변화를 총칭하여 퇴행성병변이라고 함. 경추부의 퇴행성병변은 중년 이후의 환자에서 후천적인 강직성 하지마비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이며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함께 교대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

## 직무수행성, 직무기인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음. 반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음. 결국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근거가 재해보상 판단에서 중요함.

## 보고시기 및 객관적인 근거

선원들은 승선중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인사적으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걱정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보고를 뒤 늦게 하는 경우가 있음. 일정시간이 흐른 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 부족으로 보상 받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음.



## 퇴행성병변

### ○ 원인 및 종류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에너지 과잉상태가 되면서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생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축적량이 극단적으로 증가하면 몸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는 병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어떠한 원인으로 세포의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형태적 혹은 기능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퇴행성병변이라고 함. 퇴행성병변에는 변성, 위축, 괴사, 아포토시스라는 네가지 패턴이 있음.

## 요추, 경추간판탈출증

### ○ 의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충격흡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 간판은 그 상하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수핵에는 그물처럼 되어 있는 섬유질 속에 겔(Gel)이 들어 있고, 이 겔의 수분은 70~90%임.

수핵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수분이 10대 후반(2nd decade)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부터는 탄력성이 약해짐. 한편 섬유륜도 나이를 먹으면서 방사선상으로 찌지고 탄력성이 줄어들기 시작함.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찌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을 누르고 이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탈출증(Hernia of Intervertebral Disc) 또는 수핵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이라고 함. 이 증상은 발생부위에 따라 요추간판탈출증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원인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노화에 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 교통사고 등 각종 외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바르지 못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임. 특히 평소 잠을 자는 자세도 유의해야 좋은데, 옆드리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진단법

척추조영술(Myelography), 척추전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척추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근전도법(EMG),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나 MRI가 정확성에 있어서 뛰어나고 간편하므로 우선적으로 이 방법을 택함.

## 요추, 경추간판탈출증

### 증상

요추간판 탈출증의 약 75%는 요통을 호소하지만, 이 요통은 요추염좌, 요추의 퇴생성 질환, 부인과 질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음. 이는 척추 가운데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서 약 95%가 발생하는데 그곳을 지나는 신경근이 좌골신경이므로, 이 증상을 좌골 신경통이라고도 부름. 이 증상의 근본원인은 네 다리로 걷지 않고 직립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 직립으로 인해 체중을 받는 수핵의 수분함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탄성을 잃게 되고, 이때 척추와 척추 사이에 허용가능한 운동의 범위를 넘는 움직임이 생기면 수핵이 탈출됨.

이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요추 신경근의 압박증상이며 우선 하지방사통(대개 한쪽)을 들 수가 있는데 다리가 아프고 멍기고 저려서 걷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도 누워서 다리를 뻗친 채로 어느 정도 이상을 들 수가 없음. 이 탈출은 약 86%에서 좌, 우 어느 한쪽에서 발생하지만, 약 14%는 중심성 탈출을 일으켜 양쪽 좌골신경을 동시에 압박함. 경추간판 탈출증에서는 경부동통보다 경수신경근 압박증상이 특징적인 것으로서 손 또는 손가락에 방사통이 오고 지각이 둔해짐.

### 증상의 지속기간 및 장애율

증상의 지속기간은 추간판의 탈출부위, 탈출정도, 환자의 동통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 안정 또는 견인요법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60~80%에서 호전되나, 수술로 척수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20~40%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수술성공률은 60~90%정도임. 맥브라이드 표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의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신경학적 소견이 X선 검사로 확인이 되고 안정, 견인, 고정으로 반복적 동통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3%, 중증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0%로 평가하고 있음(직업계수 5를 기준).

### 장해기간 및 중복장애 여부

추간판탈출증은 경증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보존적 치료법을 시행해도 대체적으로 치유가 되며, 중증에서도 수술을 하면 완치되거나 회복되는 비율이 68.4%에 해당함.

척추는 32개 내지 35개의 척추골로 연결되어 있는데, 경추(7개),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5개), 미추(3~6개) 등으로 구분됨. 위와 같은 여러 부위의 척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장애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됨. 물론 경추와 요추 같이 장애부위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장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척추부위에 있어서 각 마디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를 중심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하여야 함.

## 외상의 기여도

요추간판탈출증이란 나이를 먹으면서 수핵의 수분이 줄어들어 탄력을 잃는데다가 외력이 가해져서 수핵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을 찢면서 빠져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병임. 즉, 이 병의 간접원인은 척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에 관하여 Kraemer가 임상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58%가 특기할 만한 원인이 없었으며, 무거운 물건 들기 17%, 몸 돌리기(Twisting) 11%, 구부린 자세 4%, Chilling 4%, 스포츠 2%, 나쁜 자세 1%였으며, 외상은 불과 3%였다고 함. 즉, 이 증상은 척추에 아주 심한 손상을 받으면 잘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몸을 비튼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 즉 가벼운 외상에서 잘 일어나므로, 외상의 강도에 따라서 기여도를 크게 평가할 수는 없음. 따라서 요추부 수핵탈출증과 외상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결론이 없지만, 단일 외상이 아니라 가벼운 외상이 반복 또는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데 대하여는 의사들의 의견이 일치함.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외상의 기여도를 판단하여야 하나,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이행되는 퇴행성 변화를 모두 기왕증으로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감정인이 같은 연령의 사람들보다 퇴행성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퇴행성변화에 대하여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기왕증 인정 판례

[대법원1994.11.25.선고94다1517판결]

평소 요추부추간판평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기왕증이 위 상해 중 일부인 요추부추간판 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함.

### 기왕증 불인정 판례

[대법원1994.2.25. 선고93다38444판결]

원고의 제4, 5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판례**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사점** 질환의 발병이 사고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있는 이후 질병이 발생했고, 그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있었다면 그 증상의 발현이 분명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2.9.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甲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乙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乙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시사점** 사회통념상 회사 내 운동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사점** 선원법의 재해보상 내지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적 성격을 같이하는 점 등에 기초하여, 요양보상에 있어서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0057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사점**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야기된 분쟁사례와 법률적 해석을 판단한 판례로서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상청구가 허용되며 같은 부위의 척추라도 요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은 별개의 장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정비작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M/E 배기밸브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낌. 상병 보고서 작성 및 회사통보 후 정박 시 병원치료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상병으로 인한 병가를 받음.

## 일자별 이력

- 10.25 : 승선일 (울산)
- 11.02 : 작업 중 허리통증 발병
- 11.23 : 상병보고서 발송
- 11.24 / 2018.12.13 : 승선 중 통원치료
- 11.26 : 해무과장과 조기교대 교섭
- 12.20 : 하선신청 (상병으로 인한 병가)
- 12.24 : 하선 (울산)
- 12.26 ~ : 현재까지 병원 검진 및 치료 중

## 질문

기관설비 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지만 의사소견상 퇴행성병변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음.



### 상담인 주장

중국 조선소 상가 수리 이후에 정비가 필요한 장비를 수리 및 정리·정돈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업무보다 과중한 작업을 함.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과로와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지만 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함.

작업 중 통증을 느꼈지만 작업 마무리 중요성과 선내에 비치된 파스와 개인용 비상용 물파스로 치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이후에도 각종 기관 예비품 수리 보관 작업에 임함.

해당 선박 승선 전에 건강검진 시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10년에 걸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건에도 요추 관련은 없었음. 이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노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 경과를 넘어, 실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재해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함.

상병을 당한 11.02일자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못한 사유는 개인적으로 치유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 점, 중요한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원을 대체할 인원이 없었던 점, 해당 사업장에 3건 (연돌작업 시 상병, 통선 승하선 시 상병, 조리장의 내과적인 상병) 의 상병 건이 종결이 되지 못하여 승선 전에 안전사고 예방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기에 상부 보고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 점이 있음.



### 사업장 주장

상담인이 주장하는 상병 일시는 선박의 부두 접안을 위한 스탠바이 시간이었으며 같이 승선한 선원 중에 작업 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선원이 없으며 기관장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진료병원 소견서 및 MRI 영상자료, 사고내용 등을 토대와 타병원 소견 조회한 결과 퇴행성으로 인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진료 소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상병의 발생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외력(외부요인)이 일부 관여할 수 있으며 반복적 작업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됨.



### 근로감독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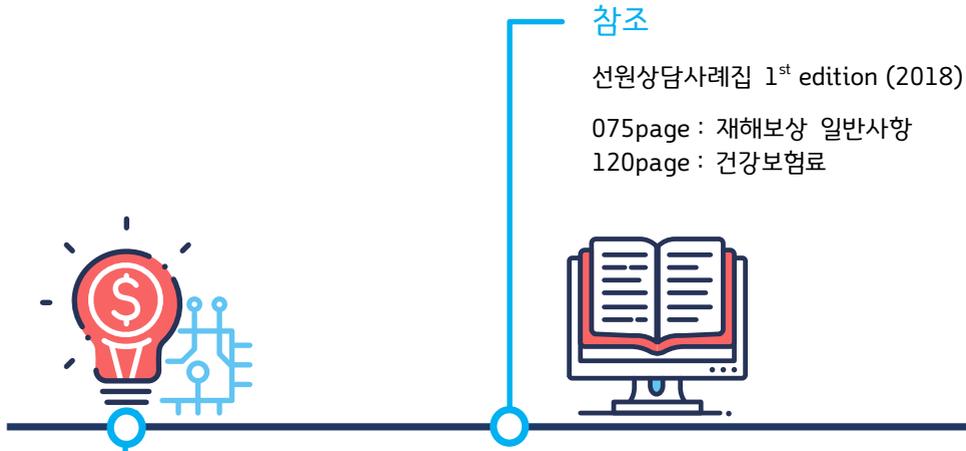
수행직무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직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승선 근무 중 청구인의 연령에 수반되어 나타난 요추부 추간판 및 척추관의 퇴행성 변화가 일상 업무 수행 중 발현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승무중에 발생한 직무외 질병으로 판단함.

- 상병 발생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 하지 않고 20여일 지난 후 보고
- 기관장은 해당 정비작업을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
- 같이 승선한 선원 누구도 다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 승무 중 외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



# 3

## 뇌혈관질환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75page : 재해보상 일반사항

120page : 건강보험료

### 중요사항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담보의 범위를 정하는 분류표(번호)에 대한 이해



### 상담내용

뇌경생증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보험적용대상분류 외이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관계법령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5-309호,2016.1.1시행]



## 개정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19.3.1][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호,2019.2.5.,일부  
개정]

# 중요사항

##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정확한 국가보건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를 토대로 한국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번호임.

##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확인

진단서 이외에도 각종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처방전 등의 서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나 가장 기본적인 확인의 방법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명과 최종확진여부, 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품의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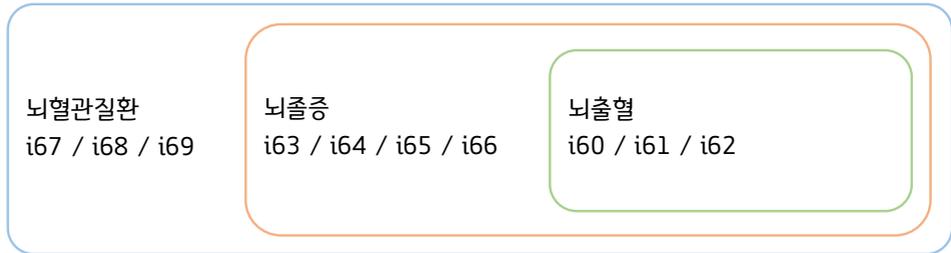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처리하지 않는 사유, 보상 범위 등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할 때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본인이 계약한 보장범위와 약관에 따라서 보장되는 병명의 범위 차이가 많으므로 상품의 담보 여부는 개인의 계약사항 확인이 필요함.



## 분류번호 (뇌질환)

### 분류번호

분류표(번호)는 모든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일원화된 번호이며 보험 또한 이를 따름. 진단을 통하여 분류번호가 부여되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담보의 범위를 정함. 단순히 뇌에 질병이 발생했으니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 약관과 분류번호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됨.



질병코드	발생가능	질병명	진단
i60	3%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i61	5.2%	뇌출혈	
i62	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b>i63</b>	<b>46%</b>	<b>뇌경색증</b>	뇌졸중
i64	7%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3.4%	대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2.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b>i67</b>	<b>21%</b>	<b>기타 뇌혈관질환</b>	뇌혈관질환
i68	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혈관장애	
i69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상기표는 뇌질환의 질병분류코드와 발생률, 보장특약을 나타내며 특약별로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뇌출혈은 3가지, 뇌졸중은 7가지, 뇌혈관질환은 10가지 범위를 모두 보장하게 됨. 발생률이 가장 높은 '뇌경색'과 '기타 뇌혈관질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혈관질환'으로 보험계약을 해야지만 완벽한 보장대비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담보(보장내용)들은 그 인정 범위를 달리하게 됨. 통상적으로 가입금액(보장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남.

분류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에 근거해야 하는데, 뇌에 발생하는 질환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MRI, CT등의 영상검사임. 영상검사는 조직검사와 달리 판독의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의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음. 그러기에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음.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의뢰자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진단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발생됨.

##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 뇌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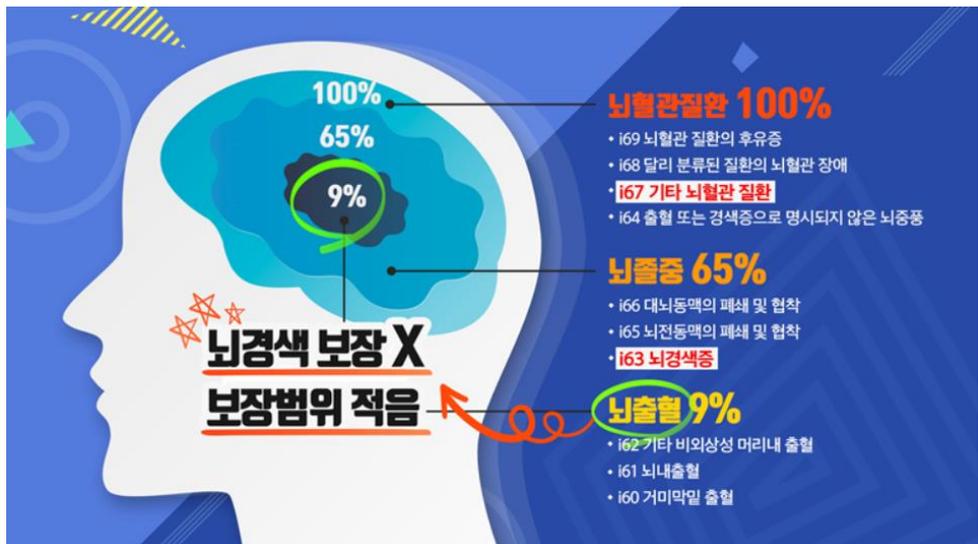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며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 뇌에 부분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됨.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며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뇌경색

혈전 등이 뇌혈관을 막아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뇌혈전, 심장질환, 뇌동맥폐색증을 들 수 있음. 뇌혈관질환 중 특히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예상하기 힘든 특징이 있으며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령자들에게 자주 나타남. 대표적인 증세는 마비이며 전날 일상 생활했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마비가 올 정도로 위험하기에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뇌출혈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하다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현상을 말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맥폐색증, 뇌동정맥기형을 들 수 있음. 머리부터 다치는 사고를 겪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은것이 원인이 되지만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원인이 되기도 함. 뇌혈관질환 3가지 중 가장 사망률이 높으며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함.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기때 빨리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함.



[참조자료, 효성손해사정, 2020.12.10검색, <http://www.hsbosang.com/m/insurance/ins04.htm>]

## 분류번호 (심장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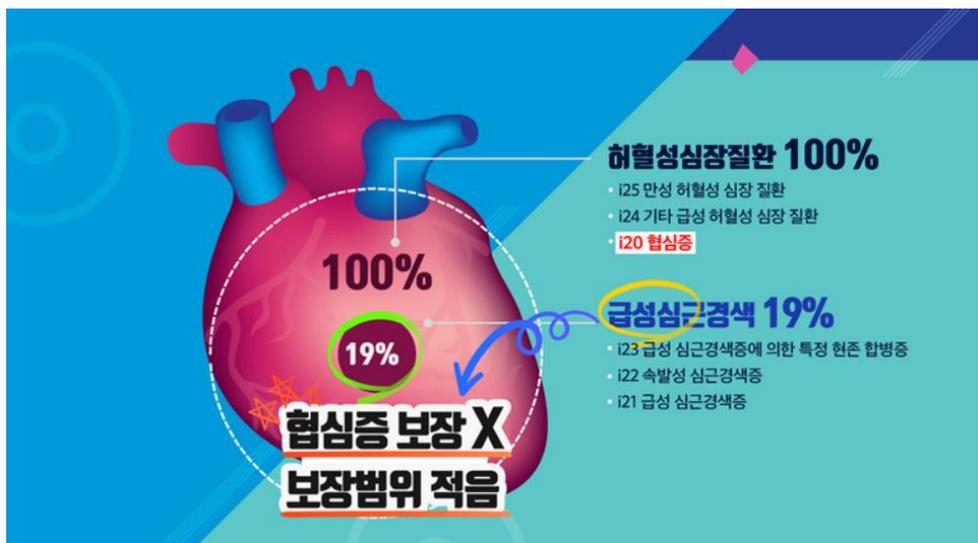
### 분류번호

심장질환은 심근경색과 허혈성심질환으로 나뉘어지는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많은 협심증(68.4%)과 만성허혈심장병(20.5%)에 대하여 보장받기 위해서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선택을 해야 함. 급성심근경색의 발병률은 전체 심장질환의 10%밖에 되지 않아서 보장액 1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많이 발병하는 협심증이나 허혈심장병에 걸리게 되어도 단 1원도 받지 못하게 됨.

허혈성심질환  
i20 / i24 / i25

심근경색  
i21 / i22 / i23

질병코드	발생가능	질병명	진단
i21	10.2%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경색 (10.4%)
i22	0.1%	후속 심근경색증	
i23	0.1%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b>i20</b>	<b>68.4%</b>	<b>협심증</b>	허혈성 심질환(100%)
i24	0.7%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20.5%	만성 허혈심장병	



[참조자료, 효성손해사정, 2020.12.10검색, <http://www.hsbosang.com/m/insurance/ins04.htm>]

##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목적

정확한 국가보건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를 토대로 한국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번호임. 각종 질병, 손상 및 외인 등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한 코드로 부호화하여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며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았을 때 처방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확인방법

일반 진단서 양식에서도 진단명(병명 또는 주상병)과 함께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를 기재하는 칸이 있으며 여기에 의사가 진단한 병명에 따라는 코드가 부여됨. 질병분류번호는 진단서 이외에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각종 확인서, 소견서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의무기록사본, 처방전 등의 서류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가장 기본적인 확인 방법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명과 최종 확진 여부, 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안점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보험금 청구 전에도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서류부터 접수하는 경우가 많음. 해당사항이 없거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음.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금 서류 접수 전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코드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함. 또한 진단서에 작성된 질병분류코드가 맞아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의사의 진단이 주관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환자가 부탁한 진단명 또는 진단코드인 경우, 대학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았을 때 다른 진단명이나 질병분류코드 부여가 가능한 경우, 통계 기준 상 맞지 않는 병명과 코드가 부여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진단서 예시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		
질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종 진단	(주상병)  (부상병)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용 도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번호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의료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출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질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체크(√)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를 기입합니다.

# 상담내용

## 사실관계

20여년 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승무를 한 후 마지막 선박에서 하선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음.

## 용어파악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질환 #지주막하출혈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분류번호 #분류표 #병명코드 #본인일부부담금 #상병명(상병코드) #수술명(수술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질문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지만 진단상병명이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음. 보상이 왜 이루어 지지 않는지?

뇌혈관과 관련하여 분류되는 병명 용어로는 뇌출혈(지주막출혈,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졸중(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뇌혈관질환(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총 10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0가지에 해당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국가보건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질병, 손상 및 외인 등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한 코드로 부호화하여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처방전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인의 경우 개인보험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뇌출혈진단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뇌출혈로는 지주막출혈, 뇌출혈 및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 포함됩니다.

뇌혈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46%)되는 뇌경색증까지 보상이 되려면 뇌졸중(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진단까지 포함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많이 발생(21%)되는 기타 뇌혈관질환이 보상 되려면 뇌혈관질환(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처리하지 않는 사유, 보상 범위 등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할 때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약관에 따라서 보장되는 범위의 차이가 많습니다.

# 4

## 재해보상기간



### 중요사항

재해보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업무 차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 재해보상 기간의 산입 여부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75page : 재해보상 일반사항



### 상담내용

재해보상 기간에 본인의 비용으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재해보상 종결이 후에 재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함

## 관계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 판정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 [사건번호2005부해653/부노96,20  
05.8.31.판정]

# 중요사항

##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2005.8.31. 2005부해653/부노96 판정] 에서는 병가 기간 중에 해외여행으로 상병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에 전념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상병치료가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병가부여의 기본취지에는 어긋난다고 판정함.

## 재해보상 기간 중 해외여행

재해보상 기간 중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 중에 근로자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일 것임. 국외 병원진료 등 치료 목적 이외에는 국외로 출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 판정을 통해서 파악 가능함.

##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형태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하선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 및 해지가 되지만, 상담인과 같이 재해보상 기간으로서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러므로 상담인의 경우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직무상 상병'으로 재해보상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판정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 2005.8.31., 2005부해653/부노96 판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는 목적이 근로자가 병가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여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중략) 병가기간 중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총 12일(병가기간 5일)간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상병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병치료가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여행기간이 병가기간에 비하여 짧다고 하더라도 병가부여의 기본 취지에는 어긋난다 할 것이다.'라고 판정함

**시사점** 병가는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집무할 수 없는 때 등에 한하여 엄격하게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중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병가 중인 직원은 병가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고 국외 병원진료 등 치료 목적 이외에는 병가 기간 중에 국외여행을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승무 중 상병으로 하선하여 검진한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받음. 직무상 상병으로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9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함.

## 용어파악

#승무중 직무상상병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재계약 #재해보상 #재해보상 종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양 #상병 #병가부여

## 질문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승무를 해 왔지만 약5년간 지속적으로 재 계약을 함. 재해보상 기간이지만 본인의 비용으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재해보상 기간이 종결 후 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함. 적절한 처사인지요?

상담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형태로 고용이 되었으므로 하선과 동시에 고용 해지가 되어 선박소유자가 재 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인은 승무 중 부상을 당하여 선원법 상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담인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재해보상 기간 중에 해외진료를 위하여 출국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유로 국외로 출국한 것이므로 상기의 선원근로계약 해지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5부해653/부노96 판정. 2005.8.31)에 따르면 “병가 기간 중에 해외여행으로 상병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에 전념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상병치료가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병가부여의 기본취지에는 어긋난다고 판정” 하였지만 재해보상을 종결 또는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인의 해외 체류로 치료에 전념하지 않아서 재해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은 의료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제외하자면 재해보상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선원근로계약이 해지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나 재해보상 종결 후 재 승무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선박소유자의 의견에 대하여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 5

## 출퇴근재해



### 중요사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면서 선박에 승무를 하고 있는 선원이 출퇴근 시 사고 발생하였을 때 적용 내용 이해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13page : 적용범위



### 상담내용

- ①선원인지 여부? ②승무 중 근무시간의 산정? ③출퇴근 중 재해 시 보상 여부?

## 관계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판례

대법원1999.9.17. 선고99다24836판결  
대법원2018.7.12. 선고2013다60807판결  
대법원2018.9.28. 선고2017다53210판결

# 중요사항

## 선원 해당여부

상담인이 승선한 선박의 국적, 총톤수,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을 고려 하였을 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해당함. (근로기준법과 선원법과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선원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선원근로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 또는 준용됨)

##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출항준비(엔진준비, 서류검토, 선내정리, 날씨확인 등)를 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과 마지막 항구에 입항하여 업무 정리를 하는 시간이 포함 됨. 단 승선을 하였다고 하여서 근무시간으로 산입되는 시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담당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는 시각을 의미함. 그러므로 출항(06:00)을 위하여 준비하는 약 1시간과 마지막 항구 입항 (19:00) 후 업무 정리하는 약 30분을 포함한 시간이 총 근무시간이 됨.

## 출퇴근재해 적용여부

상담인과 같이 선박의 승·하선에 필요한 순로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당요건 충족(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시에는 선원법 상의 승무 중 직무의 재해보상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선원 적용기준

선원법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법령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선박의 국적, 총톤수, 선박의 종류 및 항행구역을 기준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법상 선박, 어선법상 어선, 선박의 국적, 톤수, 승무, 선원,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통하여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선원법 제3조).

### 적용범위 기준



### 선원해당 여부

선박의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한민국선박</li> <li>○ (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li> <li>○ (적용)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li> <li>○ (미적용) 상기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국적의 선박에 승선한 대한민국선원은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음. 단, 선박소유자와 선원 사이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선원법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li> </ul>
총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원부, 선적증서원부에 등록된 선박의 톤수를 기준</li> <li>○ (미적용) 총톤수 5톤 미만의 항해선이 아닌 선박</li> <li>○ (미적용)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li> </ul>
선박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내항·외항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부선</li> <li>○ (미적용) 상기 외 부선</li> <li>○ (미적용) 해군함정·경찰용선박·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li> <li>○ (미적용) 뗏목, 카누, 카약, 조정 등 기선·범선·부선 이외의 선박</li> </ul>
항행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적용) 호수,강,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li> <li>○ (적용) 상기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예선은 적용</li> </ul>

## 선박 승선인 중 선원이 아닌 사람

### 선원법 시행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
-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 항만운송사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 상기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의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육상근로자 적용기준



**5**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미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산정 방법

상시(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시기)근로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근로기준법과 선원법과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선원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선원근로 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 또는 준용됨

## 승무

### 승무 중 의미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승하선하기 위한 기간 / 상륙하는 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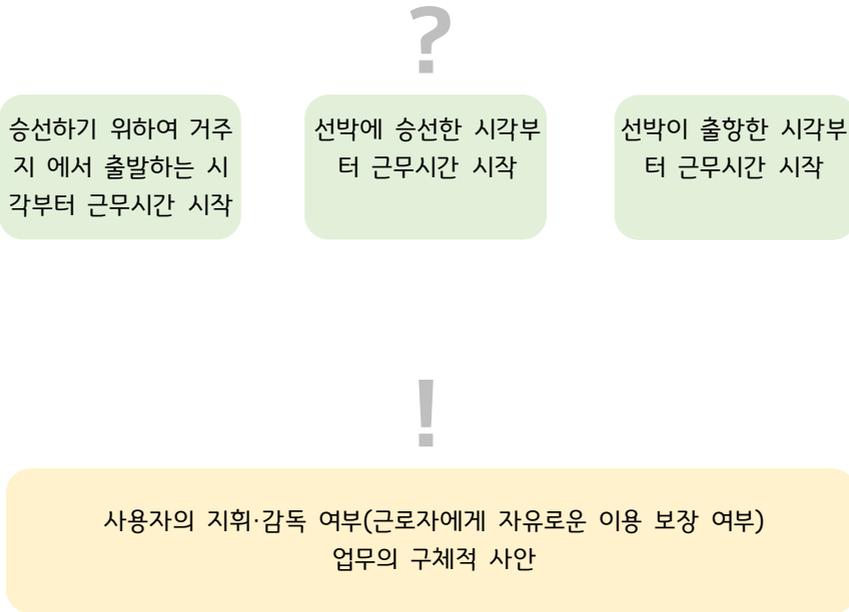
선원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 24836, 판결)

### 승무 중이지 않는 기간

선박에 승하선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거주지로 이동하고 난 이후 기간 또는 정상 순로(원래의 순서에 따른 길)외의 경로 또는 방법으로 이동하는 길을 의미함.

## 근무시간

### 근무시간 시작 기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정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님.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판례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판시사항)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공2018상, 3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공2018하, 1431)

**시사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중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지,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간섭이나 지시 등이 있는지, 휴게장소나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판례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4836 판결]

판시사항) [1]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사망'의 의미. [2]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이 휴무기간 중 갈 곳이 없어서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기간은 사무(私務)가 아닌 '승무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원이 휴무기간 중 하선하였다가 휴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공2018상, 3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공2018하, 1431)

**시사점** 직무의 재해에 대하여는 '승무 중'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 중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53210,53234 판결]

판시사항)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심은,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 51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휴식시간(3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2시간 근무 후 부여되는 1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간식시간으로 부여된 1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시사점**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 출퇴근재해

### 정의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됨.

### 인정기준

항목	요건	내용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b>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b> 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신청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함.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보상범위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어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함.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요함.

## 적용사례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 이던 앞차량을 충돌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 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일 반 사 항	재해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0. 3. 6.	
	출퇴근 구분	<input type="checkbox"/> 출근중 사고 <input type="checkbox"/> 퇴근중 사고 <input type="checkbox"/> 사업장간 이동중 사고			
	사고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통사고(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 기타: ) <input type="checkbox"/> 도보 등 기타사고( )			
	교통수단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input type="checkbox"/> 그 외(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사고			
	사고발생 일시	2018. 1. 4.			
	통상 출퇴근 소요시간	01:10			
재 해 발 생 상 황		장소(주소)	시간		
	출발장소	자택 (주소) 울산시 중구 백양로 47(성안동)	07:40		
	사고장소	백양슈퍼 앞 도로 (주소) 울산시 중구 월평로 백양사거리	08:30		
	도착(목적)장소	근로복지공단(본부) (주소)	08:50		
	일탈/중단	출퇴근 과정에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을 멈춘(중단)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사유: 5세 자녀를 우정동 소재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사고)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고 상황도 (필요시 작성)				
보 험 정 보	구분	운전자명	교통사고 유형	차량번호	보험종류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	보험금 수령여부	보험금 수령액(원)
	재해자 탑승 차량	홍길동	자가	37마1111	종합
		삼성화재해상보험(주)	20180104-00032	미수령	-
	상대방 차량	손오공	자가	12거9999	종합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0180104-12345	미수령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고인(근로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 상답내용

## 사실관계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차도선(여객정원 120명)에 출·퇴근하면서 승무함. 선원근로계약은 ○○농협과 체결함.

차도선 : 여객선의 한 종류로, 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카페리선과 비교할 때 차도선은 화물적재구역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운항시간표

번호	항로	출항	입항	번호	항로	출항	입항
1	A—B	06:00	06:40	07	A—B	12:00	12:40
2	B—C	07:00	07:40	08	B—C	13:30	14:10
3	C—A	08:00	08:40	09	C—A	14:30	15:10
4	A—B	09:00	09:40	10	A—B	15:30	16:10
5	B—C	10:00	10:40	11	B—C	16:30	17:10
6	C—A	11:00	11:40	12	C—A	17:30	18:00

## 질문

①선박을 운항중인 회사가 ○○농협이므로 선박에 승무 중 이어도 선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선원이 맞는가요? ②출퇴근하면서 선박에 승무 중에 있으며 승선하여 출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과 입항 후 마무리하는 시간이 존재함. 근무시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③출퇴근 중에 다치면 보상이 되는가요?

① 선원인지 여부는 선원법 제3조인 적용범위 규정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선원법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법령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선박의 국적, 총톤수, 선박의 종류 및 항행구역 등을 기준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법상 선박, 어선법상 어선, 선박의 국적, 톤수, 승무, 선원,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통하여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의 경우 사업장 명칭에 관계없이 상기 적용개념 적용 시 선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인의 경우에는 출항준비(엔진준비, 서류검토, 선내정리, 날씨확인 등)를 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과 마지막 항구에 입항하여 업무 정리를 하는 시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승선을 하였다고 하여서 근무시간으로 산입되는 시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담당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항(06:00)을 위하여 준비하는 약 1시간과 마지막 항구 입항(18:00) 후 업무 정리하는 약 30분을 포함한 시간이 총 근무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상담인과 같이 선박의 승·하선에 필요한 순로의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해당요건 충족(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시에는 선원법 상의 승무 중 직무외 재해보상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원법에 출퇴근재해 관련 내용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 구직 및 구인



### 중요사항

승무를 위하여 구직 등록해야 하는 내용과 다른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47page : 선원명부의 공인

139page : 면허의 취소 등



### 상담내용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 관계법령

선원법 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3조 [구직등록]



### 구직등록서류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수산부훈령 제  
449호, 2018.12.3

##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구직등록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함(선원법 제 109조 제1항). 상기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선원법 제179조 제2항 제2호).

#### 선원법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직·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 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방법

구직등록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작성 또는 홈페이지 사이트내에서 접 수 가능함(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해양수산부훈련 제449호, 2018.12.3)

### 절차



센터 또는 지방청에 구직등록



구직등록필증 교부



지방청에 제출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3조(구직등록)

- ① 선원수첩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직·구인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구직등록필증(9월의 범위내에서 승선 취업시까지 유효하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예비원이 구직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에 예비원 취소 공인을 받아야 한다.

## 구직등록서류

### 신청서

구 직 등 록 신 청 서							
①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영문)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중졸이하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전문대졸 4.대졸이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출신별	출신계열	<input type="checkbox"/> 1.해양계 2.수산계 3.일반계	
		핸드폰			출신학교	학교(원) 학과(과정)	
부양가족	( ) 명	혼 인		<input type="checkbox"/> 1. 기혼 2. 미혼			
②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1.해군필 2. 기타군필 3.면제 4.특례복무중 5.미필						
③신체사항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형	
④선원수첩	수첩번호				발급일자		
⑤해기면허	면허번호				외국면허	<input type="checkbox"/> 1.리베리아2.파나마	
⑥외국어능력	영 어	<input type="checkbox"/> 1.상 2.중 3.하		일 본 어	<input type="checkbox"/> 1.상 2.중 3.하		
⑦취업희망사항	구 분	직 책			업 종	선 중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⑧특기사항							
주의사항	○ 직책구분 : 선장·1항사·2항사·3항사, 기관장·1기사·2기사·3기사,통신장, 갑판장·갑판수·갑판원, 조기장·기관수·기관원, 조리장·조리수·조리원 ○ 업종구분 : 국적외항상선, 내항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상선, 해외취업어선 ○ 선종구분 - 상선 : 잡화(벌크,원목선포함), 컨테이너, 유조, LPG, LNG, 케미칼, 급유, 자동차, 냉동, 여객, 예인, 기타 - 어선 : 선망, 저인망, 트롤, 연승, 유자망, 채낚기, 봉수망, 안강망, 통발, 기타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혁 및 연계

1999년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원법」에 따른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위한 전산 시스템(내부망)을 개발하여 운영하던 중 2001년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동 업무를 연수원으로부터 이관('02년) 받아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센터 또는 각 지방청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센터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아 각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각 지방청 승선공인 업무담당자는 「선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승선공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직등록의 여부를 증명하는 구직등록필증을 확인한 후 승선공인을 처리하여야 함.

2015년말 각 지방청과 센터간 구직등록·조회 관련한 시스템을 연계하였으나, 오류발생 및 실시간 조회기능이 부족하여 선원은 아직도 센터에서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아 지방청에 제출하고 있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선원 - 구직등록안내

[https://www.koswec.or.kr/cop/cnt/selectContentsPage.do?cntId=job\\_info01\\_new](https://www.koswec.or.kr/cop/cnt/selectContentsPage.do?cntId=job_info01_new)

### 구직등록 절차

01 회원가입	구직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b>회원가입</b> 을 하여야 함
↓	
02 로그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인증을 받게 되면 <b>로그인</b> 이 가능함
↓	
03 구직정보공개	<b>이력서등록</b>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 > 이력서등록/수정에 본인의 이력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저장
	<b>구직신청</b> 일자리를 구합니다. 정식회원으로 등록되면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음
	<b>일자리 검색</b> 내 조건에 맞는 모집공고 등록하신 구직신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등록되어 기업이 인재검색을 통해 입사 지원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원하는 업체에 이력서를 발송할 수도 있음
	<b>개인정보조회</b> 승무경력, 해기사면허, 선원수첩 구직자(선원) 본인의 승무경력, 해기사면허, 선원수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등록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본부) :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남항사무소(부산남항어선원복지회관) :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 제주지역사무소(한림항선원복지회관)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39
- 포항지역사무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해양수산청 1층)
- 목포지역사무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2층)

###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접수처에서 배부)
- 선원수첩(신규발급일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 등록불가

- 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 하선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정년으로 퇴사함.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위하여 구직 활동 중.

## 용어파악

#구직등록 #구인등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업무처리지침 #구직등록 신청서 #지방청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수첩 #신원보증서 #구직등록필증 #예비원 #공인

## 질문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선박에 승무하려는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선원 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를 규정화 하였습니다. 구직등록 절차를 위반한 선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선원법 제179조 제2항 제2호)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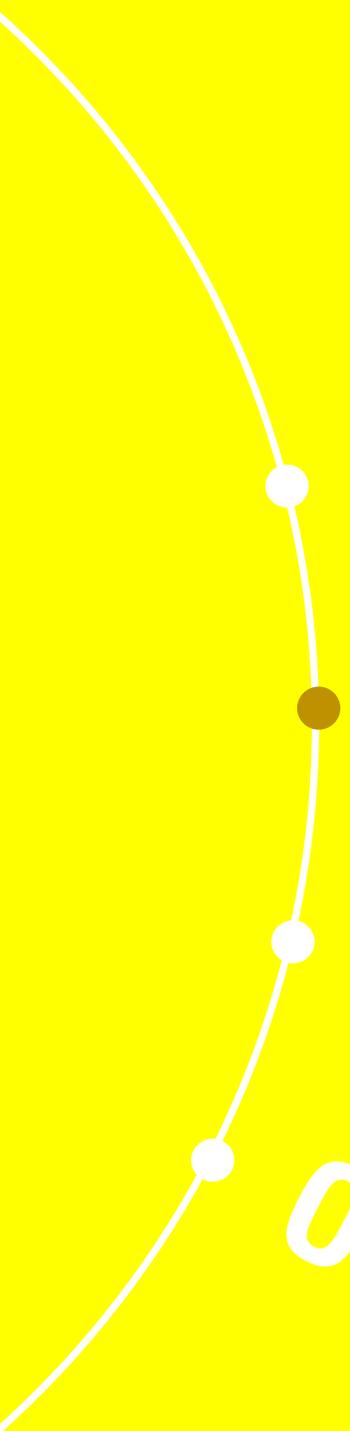
선원의 직업안정업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알선,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 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선원법 제108조 제1항).

구직등록이 이루어져야 취업을 등 각종 자료의 정확성이 반영이 되므로 절차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2014년도 선원복지사업 추진실적(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2015.1.), 2면

선원직업안정사업	계	해기사	부원
구직등록	8,397명	6,530명	1,867명
취업자	6,925명	5,541명	1,384명
취업률	82.4%	84.8%	74.1%

음주운항 처벌	72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80



01

02

# 선박직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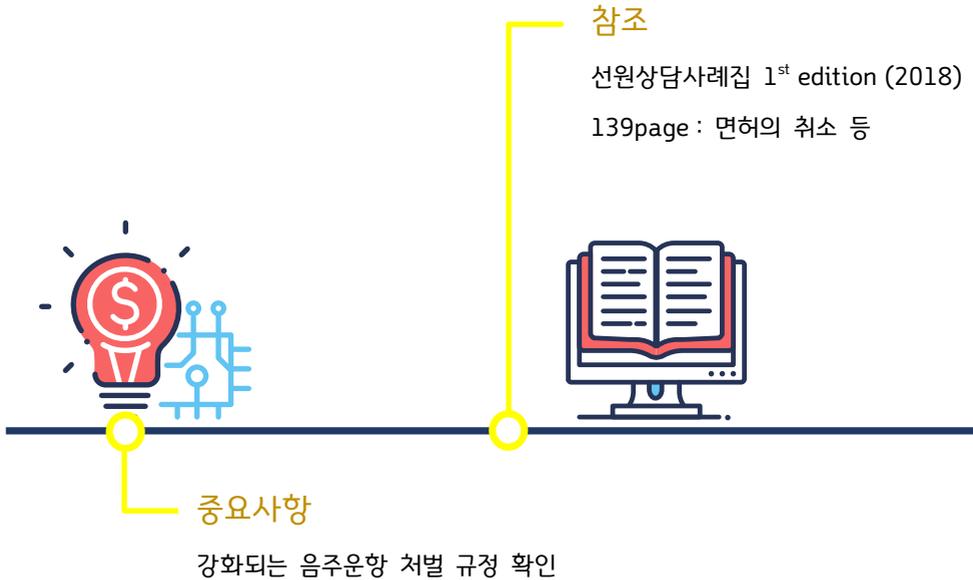
Ship personnel act

03

04

# 1

## 음주운항 처벌



##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선박직원법 제10조 [청문]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벌칙]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개정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5.5. 시행

해사안전법. 2020.5.19. 시행

선박직원법. 2020.5.19 시행

음주운항 처벌규정 (현행)



현재 음주단속 관련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있음.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조항이 있으며 선박직원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경우 1차위반은 3개월 업무정지, 2차위반은 1년 업무정지, 3차위반은 면허취소 규정을 둠.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음주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1차위반-업무정지(3개월), 2차위반-업무정지(1년), 3차위반-면허취소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1차위반-업무정지(3개월), 2차위반-업무정지(1년), 3차위반-면허취소

음주운항 처벌규정 (개정)



2019년 3월달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게 처벌과 행정처분은 강화되고 있음. 이 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정도,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과 처분을 세분화하고 있음.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임.

## 해사안전법 (2020.05.19. 시행)

### 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년이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1년 ~ 2년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2년 ~ 5년 징역이나 2천만원 ~ 3천만원 벌금

### ②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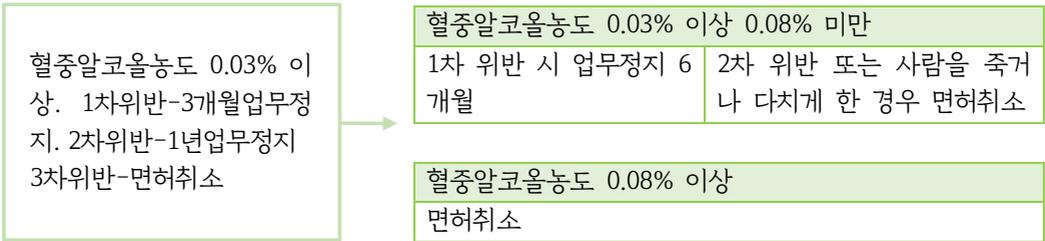
횡수와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벌금	2회 이상 위반 시 2년 ~ 5년 징역이나 2천만원 ~ 3천만원 벌금
-----------------------------	---

### ③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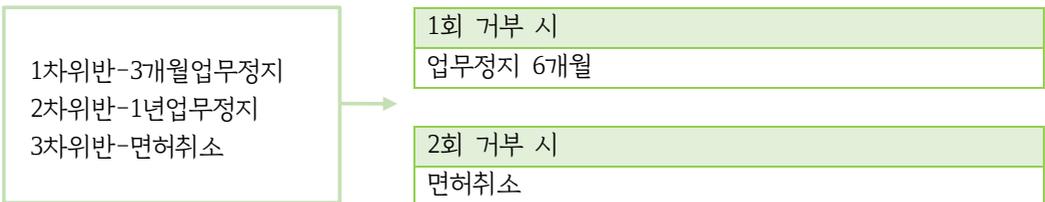
횡수와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벌금	1회 거부 시 2년 ~ 5년 징역이나 2천만원 ~ 3천만원 벌금
	2회 이상 거부 시 2년 ~ 5년 징역이나 2천만원 ~ 3천만원 벌금

선박직원법 (2020.05.19. 시행)

① 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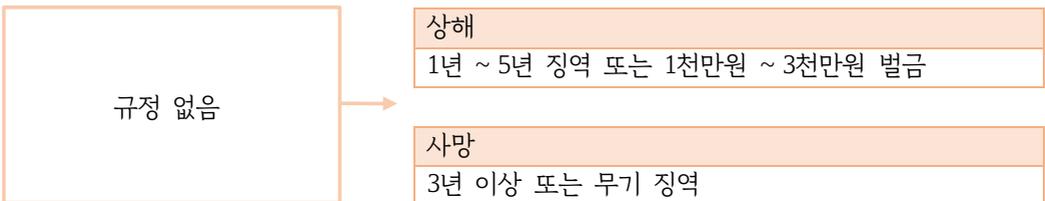


②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05.05. 시행)

①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 음주단속 처

회사 자체내의 음주 규정에 따라서 음주측정 및 기록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적인 음주단속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에 의하여 측정을 하고 있음. 해상에서의 음주단속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입항이나 하선단계에서의 단속만 이루어 질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운항중에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정부조직 개편(2014.11.19.)으로 부산 등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로 일원화되어 VTS와 경비함정간 정보공유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과태료 (일반적)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도선의 경우를 포함)하는 일체의 경우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주취운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말함.

[해사안전법 제41조, 제42조, 제105조, 제110조]

5톤 이상 : 혈중알콜 농도 0.03%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 측정거부 : 200만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1% 미만 : 50만원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100만원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00만원

# 상담내용

## 사실관계

무중항해 중 부산항 방파제 입항 시 타 선박과 충돌사고 발생함. 해양경찰 조사과에서 승선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음주단속을 실시함.

## 개정내용

2019년 3월달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게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음.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질문

선교에서 항해 당직자가 아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항해사에게 음주수치를 확인하였는데, 실제 음주수치가 걸렸다면 음주운항으로 처벌을 받는지? 몇 시간 이내 음주사실 확인을 추가로 하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사안전법 제42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경우’에 해당되는 시간은 선교에서의 근무시간 중을 의미하고 이는 당직자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담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음주측정 기계로 측정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전송 및 기록이 되므로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음주측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개정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처벌규정이 기존에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었지만 개정되면서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 2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중요사항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확인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139page : 면허의 취소 등



### 상담내용

경력으로 취득가능한 면허와 예,부선 승선을 위하여 취득해야 할 면허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함.

##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5조 [면허의 요건]  
선박직원법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



## 판례

# 중요사항

##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상담인이 승선하고자 하는 예,부선의 항행구역과 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서 보유해야 할 선박승무자격이 정해짐.

(예1) 평수구역, 200톤미만 : 선장은 6급 항해사 면허

(예2) 평수구역, 200~1,600톤 : 선장은 5급 항해사 면허

(예3) 평수구역, 1,600톤이상 : 선장은 4급, 1등항해사는 5급 항해사 면허

##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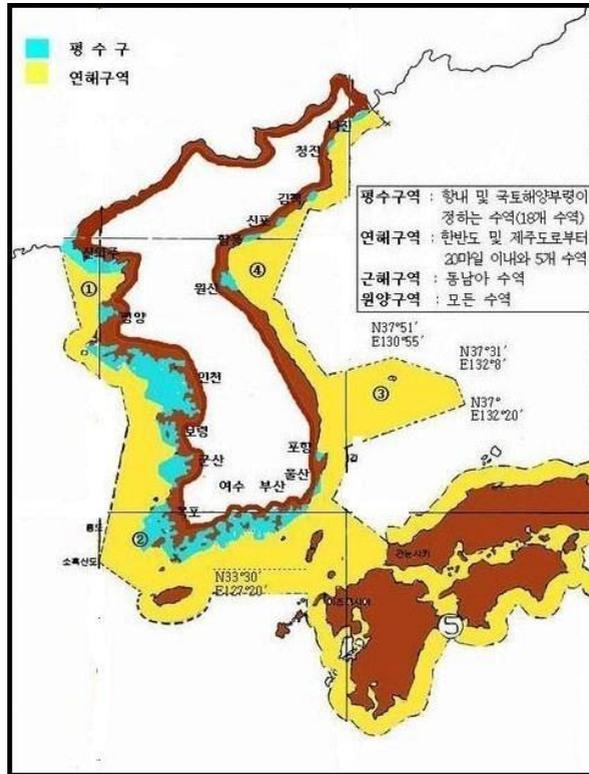
상담인이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한 기간과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에 따라서 발급가능한 항해사면허가 정해짐.

## 함정, 시운전 승무 경력

함정의 운항을 수행한 경력 확인이 필요함.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 (2007.11.23년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은 재직중 사업장으로부터 참여한 거증 서류가 필요함.



## 용어정리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2016.10.24. '유도선 규제개선 체감도 환류 간담회' 6쪽]

### 평수구역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연안의 18개 특정 수역

### 연해구역

한반도와 제주도 해안에서 20마일내의 수역과 그 외 특정 5개 수역

### 연안수역

평수구역 + 연해구역 +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 총톤수

우리나라 해사법령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용적톤으로서 선체의 밀폐된 공간의 총용적에서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을 차감한 전체용적을 톤수로 환산한 것.

###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취득할 면허로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의 항행구역과 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서 정해짐(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3]).



항행구역



총톤수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여객선 외의 선박 승무자격
연안수역	평수구역	200톤 미만	선장	6급 항해사
		200톤 ~ 1,600톤	선장	5급 항해사
		1,600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평수구역 제외한 연안수역	200톤 미만	선장	6급 항해사
		200톤 ~ 500톤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00톤 ~ 1,600톤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600톤 ~ 3,000톤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000톤 ~ 5,000톤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000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원양수역	2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
200톤 ~ 500톤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00톤 ~ 1,600톤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이하 생략>

##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상담인의 경우와 같이 함정의 운항과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는 아래와 같음.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1의3]

상담인이 취득가능한 면허의 급수는 5급항해사 또는 6급항해사 면허 중에서 함정과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인정 기간에 따라서 취득 가능한 급수가 정해짐.



받으려는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6급항해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5급항해사	6급항해사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1년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2년	
	6급항해사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항해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비고06항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11월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재직한 사업장으로부터 참여한 거증 서류 요청함).

비고10항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11항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경력인정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로서 이 또한 직무 및 경력을 요구함. 단,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를 소지한 자는 상기 직무의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상당인과 같이 6급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할 경우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또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음.

선박	직무	경력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며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 필기시험, 실기시험 통과해야 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실제 동력기구 조정 방식으로 시행되며 급수에 따라 합격기준이 다름.

#### 조종면허의 종류

구분	내용
일반조종면허	1급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급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수쿠터, 호버크라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상담내용

## 사실관계

해군 중사로 제대함(1998년). 조선소 근무 중에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음.

## 용어파악

#최저승무기준 #해기사면허 #항행구역 #평수구역 #연해구역 #연안수역  
#선박의크기 #충톤수 #선박직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예선 #부선 #합정의 운항 #선박의 운항

## 질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예, 부선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취득가능한 면허와 취득해야 할 면허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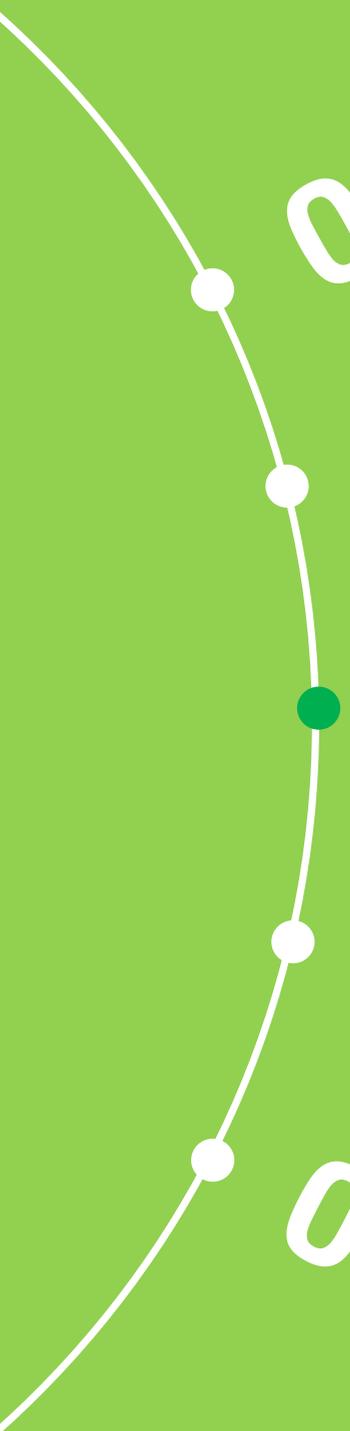
상담인이 승선을 희망하는 선박은 예,부선입니다. 영어로는 tug boat라고 하며 다른선박의 접이 안과 입항 및 출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예부선의 종류에는 대양예선(ocean going tug, 외항 및 원양에서 해양 사고에 직접 개입하여 구난작업에 참여하거나 해양구조물의 예인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 다른 예선에 비해 높은 톤수 및 마력수를 갖고 있음), 연안예선(coastal tug, 부산, 해상기중기 등 각종 해상구조물을 연안 또는 항만의 영역 안에서 이동시키는 예선. 활동영역이 연안 해역에 국한되는 것이 특징), 항만예선(harbor tug, 항만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의 일부로서, 항만운영과 관련된 각종 해상구조물을 예인하거나 대형선박의 입항, 출항 등을 보조하는 예선)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상담인은 항만예선을 희망하므로 선박의 항행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톤수가 2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선장은 6급 항해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00톤에서 1,6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선장은 5급 항해사, 1,6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선장은 4급항해사, 1등항해사는 5급항해사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담인은 6급항해사면허가 없으며 해당선박에 직무기간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6급항해사면허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무경력 인정은 별표1의3을 참조바랍니다.





01

02

**03**

# 국민건강보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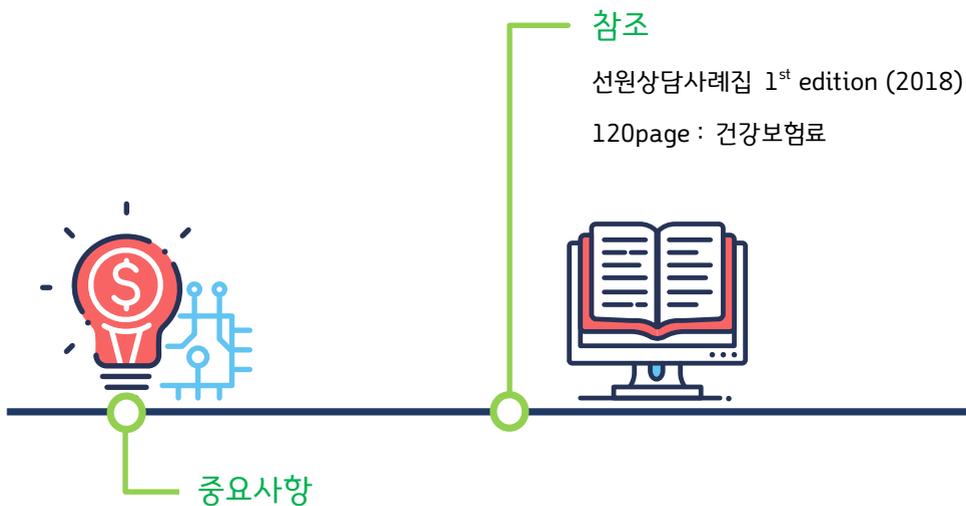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04

05

# 1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과 주요특징 이해를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 확인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



개정내용, 판례

# 중요사항

##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합니다.’는 뜻임.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을 의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그 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함.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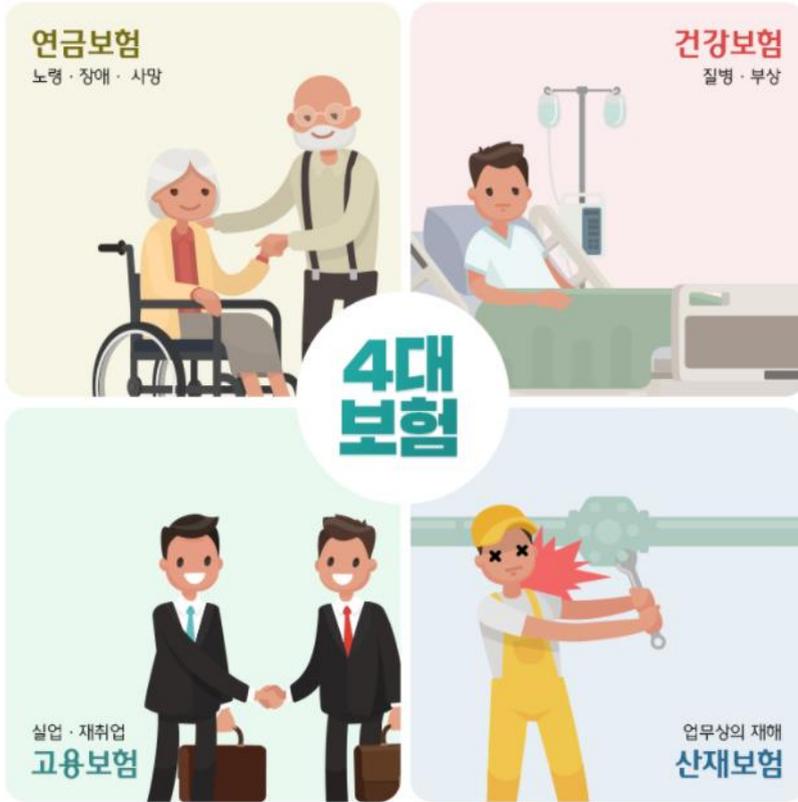
## 적용 가능 여부

상당인의 아버님은 지역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며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중 치매에 해당하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기준 절차에 따라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혜택을 볼 수 있음.



## 4대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4가지를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라고 부름.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며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는 크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음.



4대보험 중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은 육상근로자와 선원에게 적용이 되는 법 규정이 다름. 육상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에게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된 「선원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됨.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는 선원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선원법 제106조).

대상	적용 법 규정
육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	선원법 재해보상
선원 (해외취업선원)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선원 (원양어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4대보험 내용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보험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국가가 관리하여, 향후 해당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임.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험금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모아두었다가, 향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함.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구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임. 고용보험은 외환/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계속 확대되는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필요성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들이 증대되고 있음.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임. [육상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에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 [선원]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

4대보험 중에서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은 ‘건강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건강보험제도와는 분리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됨.

구분	근로자부담	회사부담	합계	비고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335%	3.335%	6.67%	
장기요양보험	0.34%	0.34%	0.68%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0.8%	1.05%	1.85%	150인미만기준
산재보험	전액회사부담	업종별상이		
총부담율	9.0%	9.2%	18.20%	산재보험제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년도	1988년	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실시)	1995년	1964년
기본성격	소득보장 장기보험	의료보장 단기보험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제정관리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관관리	부과방식 이원회관리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관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자격관리	직장·지역 통합	직장·지역 통합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보험료부과	사업장·지역(개인)	사업장·지역(세대)	사업	사업
적용대상 (의무가입)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적용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주요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함.
- ②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과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10.25%(2020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  
 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③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음.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임.
- ④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음.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됨.

##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짐.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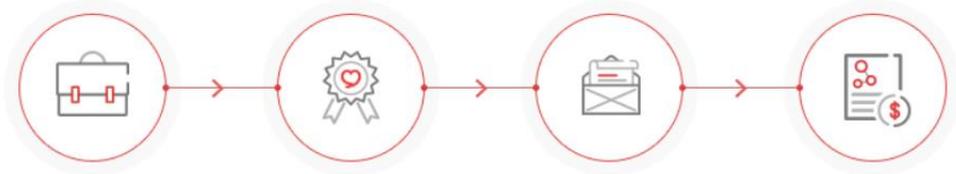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음.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절차



<b>01</b> 장기요양인정신청,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b>02</b>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b>03</b>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b>04</b>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	--	--

###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상담인의 아버님은 선원으로 외항선박에 2017년도까지 승무 하였으며 정년이 도래한 2017년 11월부로 해당사업장에서 퇴사함

## 용어파악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4대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재해보상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질문

선원이었던 아버님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선원관련단체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제도를 '장기요양보험' 이라 하며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또는 자제분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입니다.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절차에 따라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절차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원관련단체라 하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스포츠훈련, 후유증상관리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의가 필요합니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051-996-3649).

# 2

## 비급여진료비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075page : 재해보상 일반사항

092page : 요양의 범위

120page : 건강보험료



### 중요사항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이해



### 상담내용

직무외 상병으로 재해보상을 받고 있지만, 진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점 문의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요양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비급여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9조 [자기공명영상진단]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 개정내용, 판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3.21, 보건복지부령 제619호, 2019.3.21., 일부개  
정]

# 중요사항

## 진료비 - 급여,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임. 급여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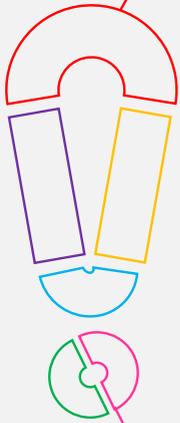
급여인데도 상병인이 전부 낸다는 의미는 동네 병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루어짐.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진행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으로,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충당됨. 비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하는 항목임. 따라서 비급여는 병원에 따라 그 비용이 다양함.

## 비급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함.

하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인 횡수 제한을 넘겨서 개인이 필요하여 추가로 촬영하게 되는 MRI,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개인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무통주사), 개인의 희망에 따른 상급 병실 사용료 차액 및 선택진료 같은 항목은 개인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임.



## 급여와 비급여

### 차이



급여 병원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한 치료 항목임. 병원비를 100%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대개 30%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급해 줌. 환자는 병원비 30%를 결제하고 병원은 못 받은 70% 병원비를 나중에 공단에 청구하여 받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치료는 MRI, CT촬영 등이 있음.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치료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 있음.

### 진료비 영수증 - 예시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일부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음. 그리고, 일부본인부담금은 다시 ①본인부담금 ②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짐. 진료비를 내게 될 때, 우리는 ②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 ‘①본인부담금 + ③전액본인부담금 + ④비급여’를 더한 금액을 냄.

항목	급여			④비급여
	일부분인부담		③전액본인부담금	
	①본인부담금	②공단부담금		

급여



일부본인부담 (①본인부담금, ②공단부담금)

‘②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임. 즉,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①본인부담금’을 개인이 진료비로 내게 됨. ‘①본인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입원 시 개인이 20%, 외래진료 시 병원 종류에 따라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①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됨.

③전액본인부담금

급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전액본인부담금’이라고 함. 개인이 ‘전액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는 경우
  -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
- 
-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
  -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응급환자, 혈우병환자, 분만, 치과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
  -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급여란

### 용어정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함.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임.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예시 항목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음.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됨(MRI 경우 2020년 5월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부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임.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 비급여 공개항목은 국민, 의료계, 정부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공개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개항목	2020년 4월 기준 : 564항목(비급여 항목 533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보건복지부 고시 2019-32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 공개대상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MRI

용어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진단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MRI 관련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한다.
- ③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 인정
  -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 인정

참조

MRI 촬영 시 보험급여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8.10.0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 검사 MRI 촬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됨.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2018.10.01일 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가 × 본인부담률 (의원 30% ~ 상급종합병원 60%)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2019.04.30,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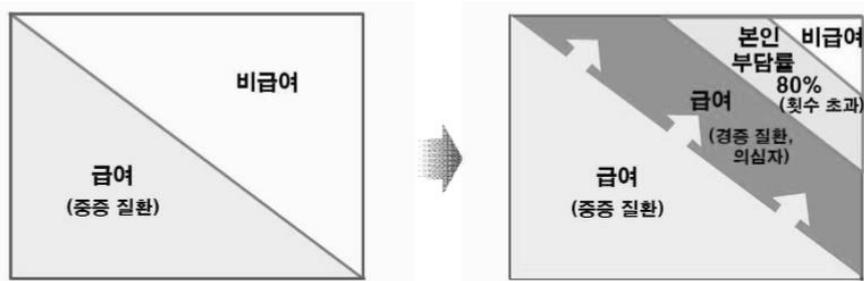
	구분	의원	병원	종합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5만~55만	31.5만~55만	36만~70.9만
	평균	38.2만	41.9만	48.4만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3만	27.6만	28.8만
	환자부담(60~40%)	8.8만	11.5만	14.4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가 됨.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 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 (판독료에 한함, 10%) 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함. 또한 입원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함.

###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사례

- ① 50세 K씨(남)는 어지럼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과거 뇌졸중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뇌 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뇌 질환이 진단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비용 75만원을 부담함.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9만9195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7만9500원(57만5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됨.
- ② 8년 전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50세 P씨(여)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F상급종합 병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로 뇌혈관과 뇌 MRI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90만원을 부담함.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및 뇌(혈관) MRI 금액(47만7217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8만6300원(61만37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됨.

###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8.9.12,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 (뇌 일반 MRI 기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8.9.12,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요양급여기준

진료받을 때 궁금하게 여기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를 확인할 수 있음

사전정보공개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F3254>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업무기준 정보 > 요양급여기준 > 요양급여비용

## 진료비 기준

총 265,277 (1 / 26,528page) 의치과 ▼ 선택 코드 ▼ 선택  검색

구분	코드	분류번호	명칭/산정 명칭	급여 부분	종별가산 적용여부	의원 단가	병원급 이상단가	적용단가 시작일
의치과	R3424058	자321-3가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공휴일 제2의수술(중병이상)	급여	가산적용	0	1135950	20190301

## 약제 기준

총 2,323 (11 / 233page)

분류명 구분	전체 ▼	적용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예) 20140101 ~ 20140201		
분류명	<input type="text"/>	성분명	<input type="text"/>		
제품명	<input type="text"/>	검색			
분류번호 ▼	분류명 ▼	성분명 ▼	제품명 ▼	적용일자 ▼	구분 ▼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dienogest 경구제	비잔정 등	2018-12-01	변경
114	해열진통소염제	naratriptan	나라믹정	2018-12-01	삭제

## 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 2019.3.21, 보건복지부령 제619호, 2019.3.21., 일부개정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제9조. 비급여대상. 별표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탈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진료
-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全顎) 치석제거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충치)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말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포함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1) 가입자 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 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7. 9. 1.>

마. 진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 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 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승무 중 직무외 상병으로 재해보상 받고 있음.

## 용어파악

#급여 #비급여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일부분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요양급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질문

승무 중 직무외 상병인 경우에는 3개월 기간동안에 진료비와 같은 요양보상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비 중 일부를 개인돈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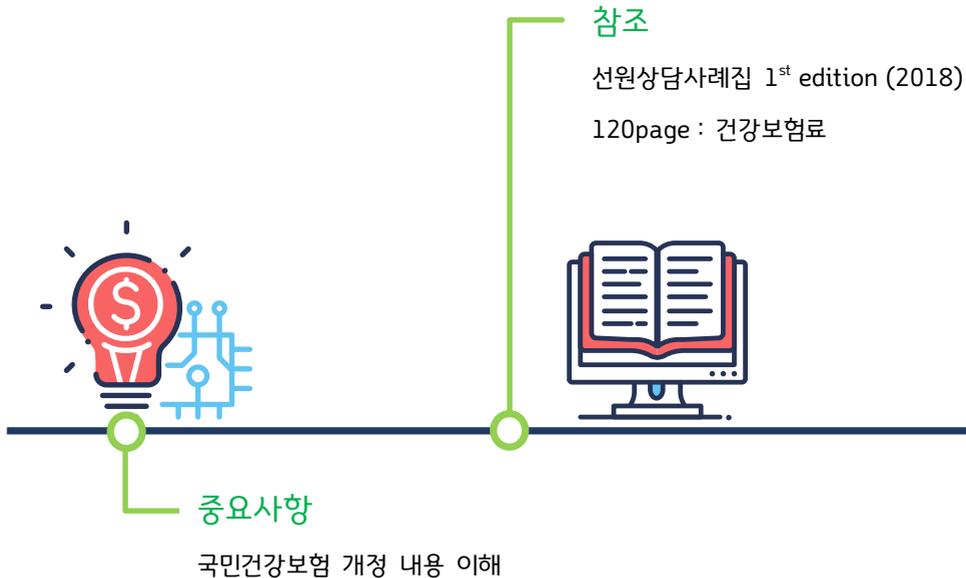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양에는 1)진찰 2)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 5)간병 6)이송 7)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인 횡수 제한을 넘겨서 개인이 필요하여 추가로 촬영하게 되는 MRI,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개인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무통주사), 개인의 희망에 따른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및 선택진료 같은 항목은 치유를 위한 추가적인 요양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진료비에는 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와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로 나뉘 어지며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것)과 전액본인부담(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진료비 구성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참조가 필요합니다.

# 3

##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내용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건강보험료 인상

###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018년) 6.24% → (2019년) 6.46%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 : (2018년) 183.3원 → (2019년) 189.7원

###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 (2018년) 7.38% → (2019년) 8.51%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완화

납부능력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상으로 보험급여 제한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급여제한대상에서 제외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기존) 만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피부양자 → (개선) 만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피부양자
- 2년/1회,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공통 목표질환 : 비만,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신장질환 등
- 성·연령별 목표질환 : 이상 지질혈증, B형 간염,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2019년 1월)  
(기존) 만 40, 50, 60, 70세 → (개선) 만 20, 30세 포함

###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암검진)



만40세이상  
2년주기



만50세이상  
1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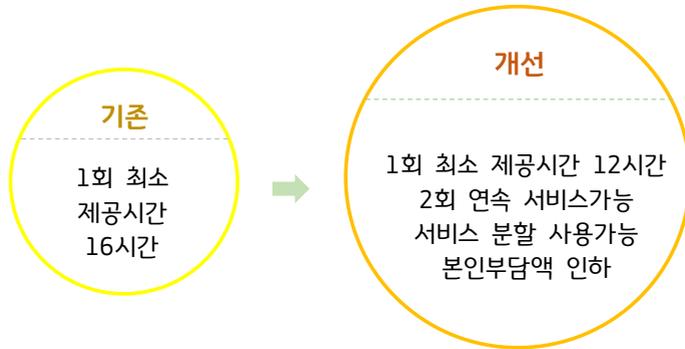
만40세이상고위험군  
6개월주기



30년이상흡연력  
2년주기  
(2019년 7월)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 종일 방문요양 개선



	24시간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2회 연속사용가능
급여비용	16~24시간 17만3350원 24시간 이상 21만5330원	12시간 14만3780원 (기본 8만원+가산6만3780원)
본인 부담액	16시간 기준 2만3260원	12시간 기준 1만2천원
연간 이용횟수	6회(최대144시간)	12회(최대144시간)
이용대상	장기요양1~2등급 치매수급자	좌동

### 복지용구 급여확대

- 요실금팬티 : 연 한도액 범위 내 최대4개 이용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또는 구입 가능

### 통합재가급여 신설

-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 급여유형 : 가정방문형, 주야간보호통합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개선)

항목	내용
산정특례 적용 질환 확대 (2019년 1월)	(기존) 827개 → (확대) 927개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월)	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년 2월)	신장, 부신, 방광, 충수, 소장·대장, 서혜부, 직장·항문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등 감염관리 6개 항목
상급병실(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하반기)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 (2019년 1월)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2019년 3월)	복합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 본인 부담률 50% 그외 근골격계 질환 : 본인부담률 80%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

## 틀니, 치과 임플란트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 (사전등록제 실시)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선정기준 (틀니)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클래스프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래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2017.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선정기준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 혜택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85%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70%

##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지원대상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개안수술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를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혜택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을 지원함.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에는 지원.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승무 중 직무의 상병으로 재해보상 받고 있음.

## 용어파악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완화 #건강검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비급여 개선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질문

최근에 개정된 또는 개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의

- ①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18년 6.24%에서 2019년 6.46%로 인상,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인상되었습니다.
- ② 납부능력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상으로 보험급여 제한 방안을 위해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급여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③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④ 장기요양 보장성이 강화. 종일 방문요양 개선, 복지용구 급여확대 및 통합재가급여 신설로 강화되었습니다.
- 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인 '비급여' 부분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 ⑥ 틀니, 치과 임플란트, 안검진 및 개안수술 혜택의 범위와 횟수 및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몇년간 먹고 있습니다. 승선을 해야 하기에 한 번에 6개월치를 처방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의사가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존에는 장기처방 가능 일수를 30일로 제한하였으나, 2001.7.1.부터 제한이 해지되어, 약제의 처방 가능 기간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른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할 사안임. 다만, 약제의 처방 투여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 상 별도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약제의 경우는 제외됨.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으로 대리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이 맞나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및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경우 적용됨이 원칙임. 따라서 국외 체류자(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은 공단의 재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출국기간 중 대리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된 경우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환수하게 됨.

홈페이지에서 진료내역 조회 후 출력이 안됩니다.

진료내역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화면 조회만 가능하며, 인쇄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만일 인쇄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지사를 방문해야 함.

처방받아 구입한 약을 집에 오는 길에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확진검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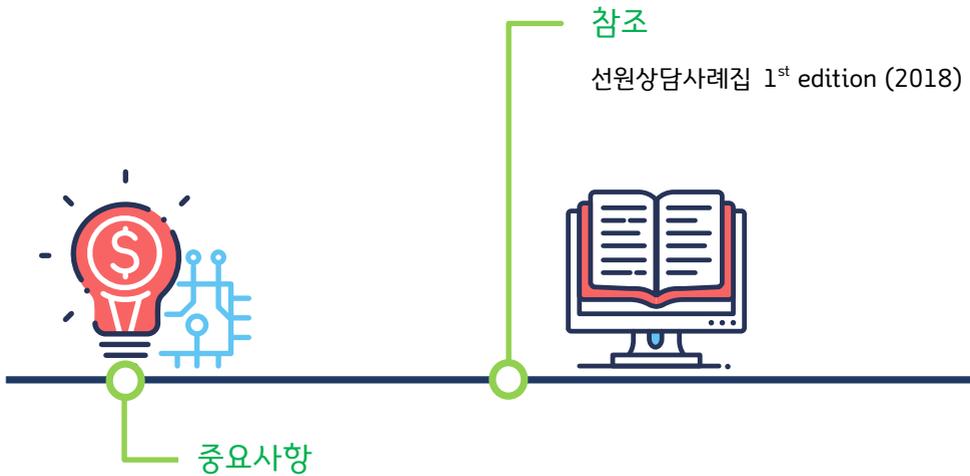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가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진료(해당 지정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최초 1회 본인부담금 면제)하는 제도임.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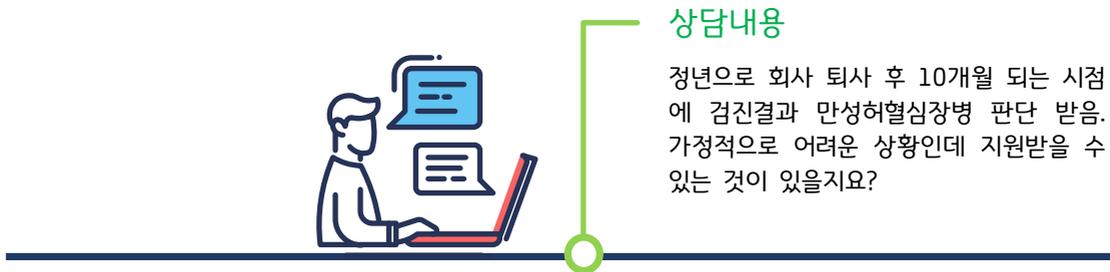
식대(기본, 가산) 소정금액의 50%를 적용함.

# 4

## 재난적 의료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해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원원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급범위]



## 개정내용, 판례

# 중요사항

## 상담인 해당사항

육상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선원에게 적용이 되는 선원법은 직무상의 재해 외에도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보상함. 따라서 직무가 아닌 경우라도 재해를 입은 경우 일정부분에 한해 손해를 보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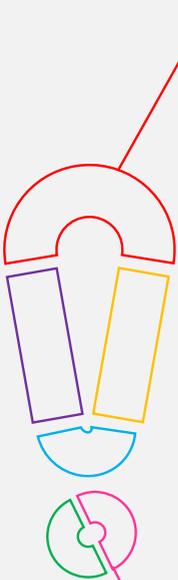
하지만 상담인은 승무 중이 아니라 하선하고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건강검진을 받는 중 해당질병 판단을 받았으므로 유발된 질병이 승선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밝혀야 함. 이는 승무 중에 업무의 형태,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상담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 근로계약형태 였으므로 하선과 동시에 고용계약 해지가 되었을 것이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이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적용대상 유무를 판단하여 신청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으로는 2019.01.14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중증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임. 다만,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01.13일 이전인 경우 진료 개시일에 따라 시범사업 또는 2018년 본사업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일자 기준 확인이 필요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8.7.1.)

### 근거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심장 질환 및 뇌혈관질환(비수술 치료 포함)은 [붙임1]의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경우에 한함.

### 지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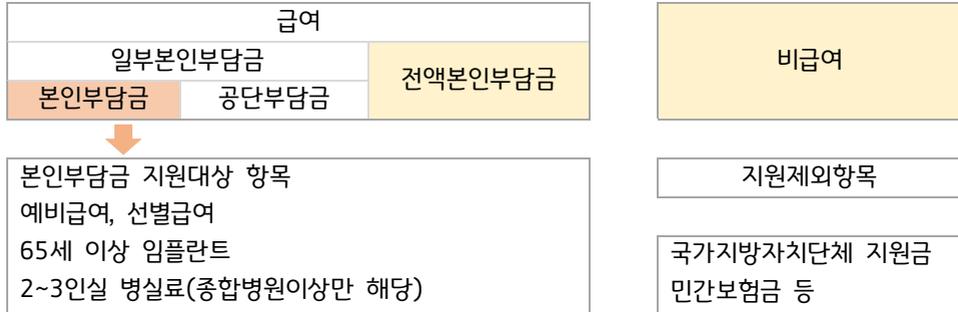
- (지원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노인틀니’까지 지원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수령금을 제외하고 지원금액 산정.

### 적용원칙

- 본 사업지침은 2018.1.1.이후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2019.1.14.이후 지원 신청한 자부터 적용함.
-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개념



### 지원절차

-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은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원금액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7일 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후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통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요청 가능.

### 적용원칙

- 본 사업지침은 2018.1.1.이후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2019.1.14.이후 지원 신청한 자부터 적용함.
-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예외적 적용기준

-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과 외래 지원대상 질환 확대(중증화상질환 추가)와 관련한 사항은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의 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함.
- 입원 또는 외래진료개시일이 2017.12.31.이전인 경우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기준 적용함(다만, 2018.1.1.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구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침 적용).

## 연혁

- 보건복지부는 2013. 8. 1.부터 저소득층에게 암·심장혈관·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2013. 8. 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보건복지부 및 모금회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등의 업무는 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함.

## 적용예시

‘뇌혈관질환’으로 2018.11.5.부터 2019.1.15.까지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300만원 부담하여 2019.2.7.에 지원 신청한 경우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은 2018년 제도화 본사업지침을 적용하여 2018.10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입원개시일이 2018.11.5.이므로), 의료비 부담수준 산정 시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2019년 사업지침을 적용하여 300만원 전액 인정(지급신청일이 2019.2.7.이므로)

‘중증화상질환’으로 2018.9.1.부터 2019.3.31.까지 외래진료를 받고 2019.4.30.에 지원 신청한 경우

‘중증화상질환’은 개정 고시 시행일(2019.1.14.)이후의 외래진료건들만 외래 합산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요건,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다만, 2019.1.14.부터 2019.3.31.까지의 외래진료비를 합산하면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9년 사업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진료건에 대해 지사결정 가능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정년으로 회사(계약직으로 고용. 12년 넘게 동일한 회사에서 승무함) 퇴사 후 10개월 되는 시점에 검진결과 만성허혈심장병 판단 받음.

## 용어파악

#재난적의료비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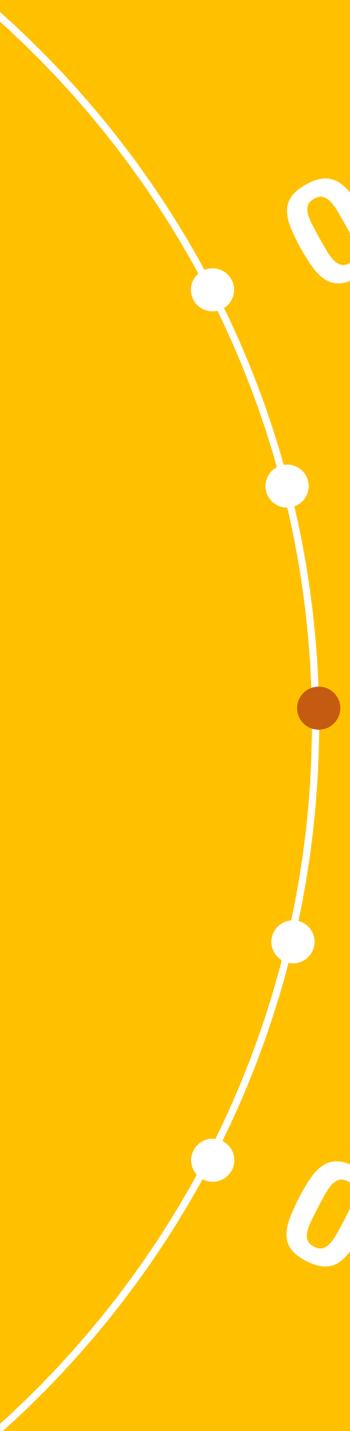
## 질문

승무기간은 오래 되었지만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요?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선원에게 적용이 되는 선원법 재해보상 규정은 직무상의 재해 외에도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인은 승무 중이 아닌 하선하고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건강검진을 받는 중 해당질병 판단을 받았으므로 유발된 질병이 승무 중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승무 중에 업무의 형태,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 근로계약형태로 승무계약을 하였으므로 하선과 동시에 선원근로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이므로 재난적의료비 적용대상 유무를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19.01.14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중증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나뉩니다. 다만,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01.13일 이전인 경우 진료 개시일에 따라 시범사업 또는 2018년 본사업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일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03

**04**

# 소득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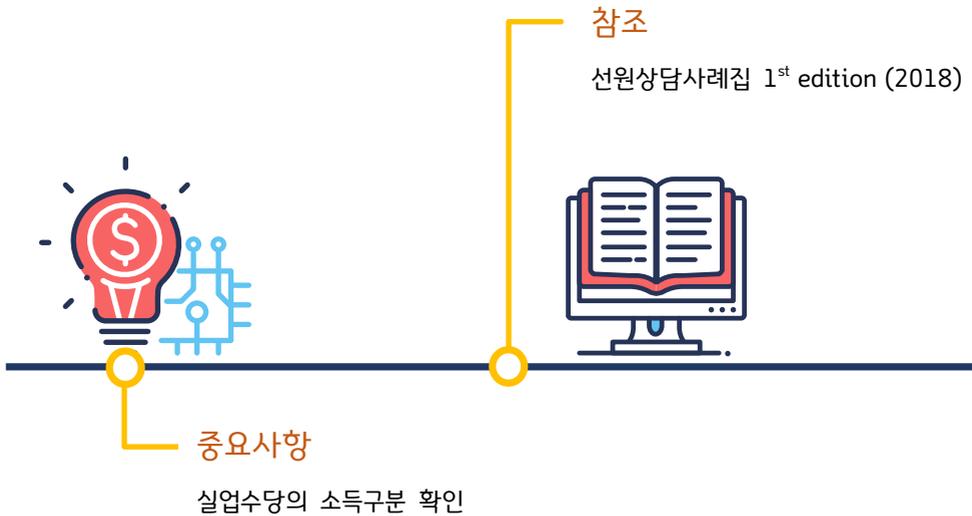
Income tax act

05

06

# 1

## 실업수당 소득구분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선원법 제55조 [퇴직금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 판례

# 중요사항

## 주안점

원양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원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국외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에 대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300만원)를 적용 받음. 승선중인 선박이 폐선되어 선원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됨.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급여 외에 실업수당(통상임금 2개월분 상당액, 이하 ‘실업수당’이라고 함)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실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근로소득? 퇴직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상에는 근로소득(제20조)과 퇴직소득(제22조)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업수당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300만원)에 포함하여 적용되지 않음.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상에는 근로소득(제20조)과 퇴직소득(제22조)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제12조)을 명시하고 있음. 선박의 폐선으로 인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수령하게 된 실업수당이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어느 곳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 항목에 포함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근로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p>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공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p> <p>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p> <p>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p> <p>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p>	<p>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p> <p>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p> <p>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함.

##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

TAX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①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②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 법령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령 선원법 제55조 (퇴직금제도)

-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③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국외근로자(선원) 비과세급여 연혁



## 국외근로자(선원) 비과세급여 적용방법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현행 200만원, 300만원)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며(통칙 12-16...4)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함(서면1팀-1324, 2007.09.27).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다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함(규칙8 ③).

국외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통칙12-16...1).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원천세과-616, 2009.07.16).

## 비과세 금액한도

용역제공장소	2011.12.31.이전	2012.1.1.~2012.12.31	2013.1.1.이후
국외 등 건설현장	월150만원	월200만원	월300만원
그 밖의 장소	월100만원	월100만원	월100만원



### 유급휴가급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므로 월 30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유급휴가는 선원이 이미 승무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 승무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유급휴가 수당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유급휴가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선내급식비

승선 중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료를 구입하고 음식을 하기 위하여 설비를 갖추는 일체를 포함한 용어를 선원법에서는 선내 급식이라고 함.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과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함(선원법 제76조).

선내 급식비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이 정해지는데 선박소유자가 무상으로 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서, 임금(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 선원법 제2조 제10항)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므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집행기준(2014) 12-12-2편”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함.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선원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선박이 폐선되었으며 실업수당(통상임금 2개월 분 상당액)을 지급받음. 현재 상담인은 급여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300만원)를 적용받고 있음.

## 용어파악

#소득세 #퇴직소득 #근로소득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실업수당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해고 예고수당 #유급휴가금 #선내급식비

## 질문

실업수당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여부

원양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국외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에 대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3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상담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사정으로 승선 중이었던 선박이 폐선 되어 부득이 선원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급여 외에 실업수당(통상임금 2개월분 상당액, 이하 ‘실업수당’이라고 함)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실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300만원)에 포함하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로 유급휴가급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선내급 식비인 경우에는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2

## 국외근로자 해당여부



### 중요사항

비과세급여가 적용이 되는 국외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 상담내용

항행구역이 원양구간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에 승선 중이나,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원양어업 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판례

# 중요사항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비과세급여의 금액과 적용이 되는 승무원의 범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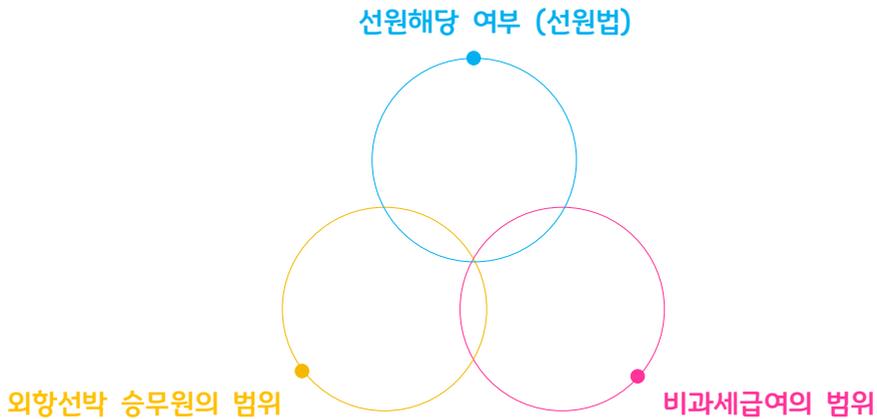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 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하므로 상담인의 선박은 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1일 1왕복선이므로 외국항행 선박이기는 하나 선박의 선원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근무형태이므로 해당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인이 승무중인 선박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1일 1왕복선으로써 오전에 해당선박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근무하는 형태임. 이 경우에는 선원이 적용받는 법령(선원법 or 근로기준법),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를 파악해 보아야 함.



### 01 선원해당 여부 (선원법)

선박의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한민국선박</li> <li>○ (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li> <li>○ (적용)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li> <li>○ (미적용) 상기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국적의 선박에 승선한 대한민국선원은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음. 단, 선박소유자와 선원 사이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선원법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li> </ul>
총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원부, 선적증서원부에 등록된 선박의 톤수를 기준</li> <li>○ (미적용) 총톤 5톤 미만의 항해선이 아닌 선박</li> <li>○ (미적용)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li> </ul>
선박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내항·외항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된 부선</li> <li>○ (미적용) 상기의 부선</li> <li>○ (미적용) 해군함정·경찰용선박·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li> <li>○ (미적용) 뗏목, 카누, 카약, 조정 등 기선·범선·부선 이외의 선박</li> </ul>
항행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적용) 호수,강,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li> <li>○ (적용) 상기의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예선은 적용</li> </ul>

## 02 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 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03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상담내용

## 사실관계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 중(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함)

## 용어파악

#항행구역 #원양구역 #원양어업 #선원법 #선박의 국적 #총톤수 #선박의 종류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승무원의 범위 #외항선박

## 질문

항행구역이 원양구간은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를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에 승선 중이나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유가 궁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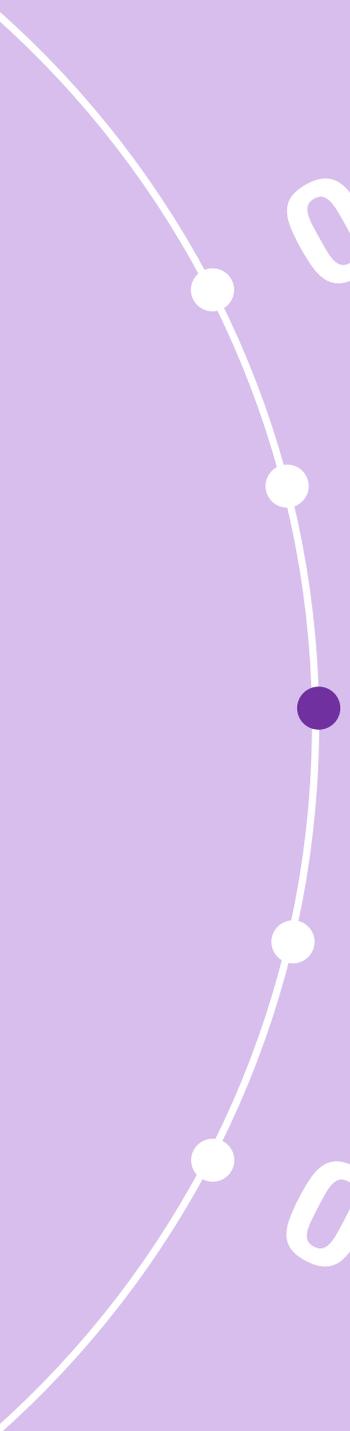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적용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비과세 적용이 되는 범위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정이 되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이란 선박이 화물의 적재, 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상기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원이어야 하며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인 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요건인 선원인지 여부입니다. 상당인이 승선한 선박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에 기항 후 당일 국내로 재 기항하였습니다. 선원법 적용대상 기준인 선박의 국적, 총톤수, 선박의 종류 및 항행구역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인은 선원입니다.

두번째 요건인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인지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1일 1왕복선이므로 외국항행 선박이기는 하나 선박의 선원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근무형태를 띠므로 해당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03

04

● **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06

07

# 1

## 퇴직연금



### 중요사항

퇴직연금 도입 시 결정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내용과 선원에게 적용되는 특이사항 이해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209page :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상담내용

DC형 수익률 정보 확인은 어디에서 하는  
가요? 직종변경 시 퇴직금 관련하여 주의  
해야 할 점?

## 관계법령

선원법 제55조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판례

# 중요사항

## DB & DC

육상직원으로 전직 시에는 DB와 DC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두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퇴직금 정산 방법 결정

- ① 해상직원(선원) 근무기간 + 육상직원 근무기간” 통산하여 육상직원 퇴직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실이 발생됨
- ② 해상직원으로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선원법 기준에 의거 계산을 하고 육상직원으로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을 확인. 단, 육상직원으로 직종변경 시에도 근속년수 승계는 필수
- ③ 만약, 개인사정 상 중간정산을 받아야 한다면, 최종 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에 따른 손실이 생김을 고려

## 퇴직연금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으므로 제도유형별(DB, DC, IRP), 입권별(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근로복지공단) 선택 후 자료 확인 가능함.

##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임.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음.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함.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퇴직금 VS 퇴직연금



### 퇴직금제도

[육상근로자]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육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선원] 선박소유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선원법 제55조).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함.

## 퇴직연금제도 구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며 이를 ‘부담금’이라 함.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한번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나누어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덜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음.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운용이 됨.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적립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되므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파산시에도 퇴직금이 안전함.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형태는 일시금,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음.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부담금) 적립	회사내부	회사외부(금융기관)
퇴직금(적립금) 운용	회사	회사 또는 근로자
퇴직금 수령	중간정산	불가능(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퇴직금 받는방법	불가능(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퇴직금 수준	일시금(퇴직시 퇴직금으로 수령)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 가능(퇴직시 IRP계좌로 이전, 은퇴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
		퇴직금 수준
		퇴직시점 월평균 임금×근속연수
		(DB)퇴직시 월평균 임금×근속연수. (DC)매년 임금총액의 1/12+투자수익/손익(개인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짐)
	수급권 보장	불완전
		보장(금융기관 적립분)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제도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산정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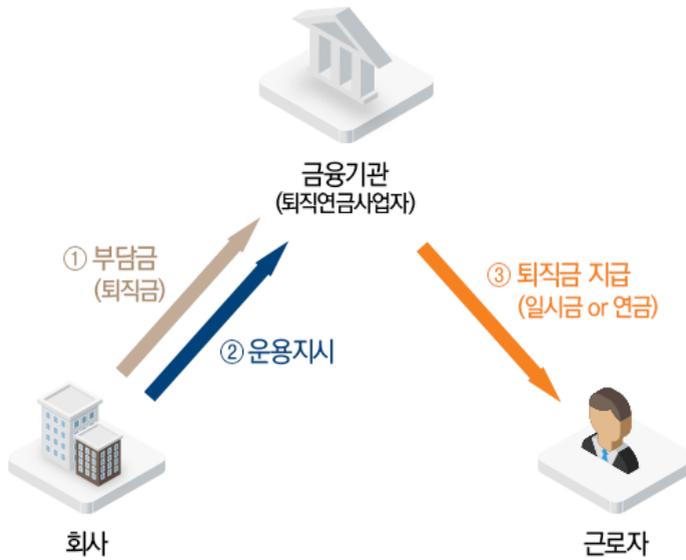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제도

- 회사는 매년 전체 근로자 퇴직금추계액의 8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2016년 기준)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의 수익/손실은 회사에 귀속
-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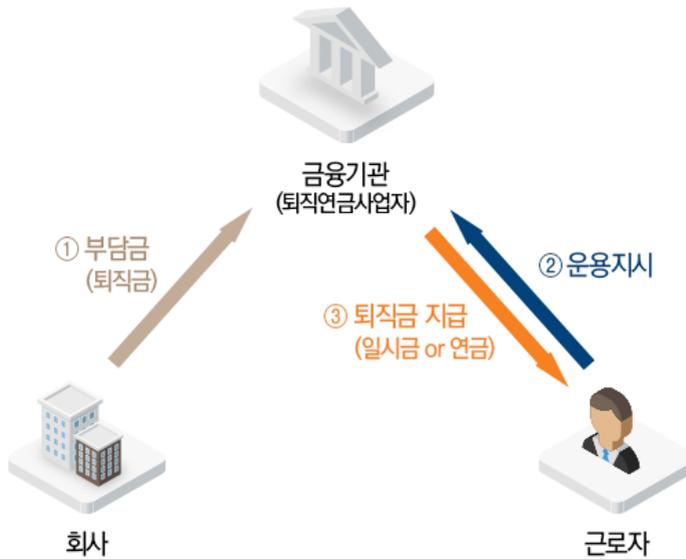
DB/DC 비교

DB : Defined Benefits / DC : Defined Contribution

	DB	DC
금융기관 적립비율	퇴직급여의 80%이상을 적립	퇴직급여의 100%를 적립
퇴직금 산정	최종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매년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금 운용 주체	회사가 직접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중도인출	중도인출 불가능	중도인출 가능(법적사유 발생시)
제도변경	DC제도로 변경가능	DB제도로 변경 불가능
제도 유리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제도 불리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확정기여형(DC)제도

- 회사는 근로자 연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납입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의 수익/손실은 근로자에 귀속
-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 DB/DC 선택을 위한 참고용 checklist

출처 : 고용노동부,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확인사항	DB	DC
장기근속자이거나 앞으로 직장 이동이 거의 없을 것이다	●	○
부족한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다	○	●
금융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수익률에 신경 쓸 자신이 없다	●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다른 노후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우리 회사는 재무가 안정적인 편이고 도산 위험이 낮다	●	○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 목돈을 위해 퇴직금 중도인출이 필요하다	○	●
매년 임금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높은 편이다	●	○
우리 회사는 근속년수가 임금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

##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DC 제도인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회사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운용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각각 달라질 수 있음.

### 비교공시 자료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를 비교공시함.
- <http://www.moel.go.kr/pension/finance/rate1.do>
- 자료 예시

기준년도	xxxx년도
제도유형	○전체 ○DB ○DC ○IRP
업권선택	○전체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검색하기

금융회사	제도유형	권역	비용부담률	연평균수익률 (5년)	연평균수익률 (8년)
xx은행	DB	은행	0.52	1.95	2.98
xx증권	DC	증권	0.44	1.74	3.31
xx생명보험	DC	생명보험	0.38	2.08	3.23
xx손해보험	DC	손해보험	0.45	2.36	3.01

### 수익률, 예상수령액 운용보고서

2021년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이 협의 중임.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요약서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 또한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 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 신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



# 상담내용

## 사실관계

퇴직연금 도입된 사업장에 근무 중임. 선원으로 승무 중이며 몇 주 후에 동일한 사업장의 육상직원으로 직종변경 예정.

## 용어파악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B #DC #IRP #퇴직금중간정산 #부담금 #적립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절차 #수익률 #예상수령액

## 질문

육상직원은 확정급여형(DB)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C)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의 상품에 따른 수익률 정보를 알 수 있는지요? 직종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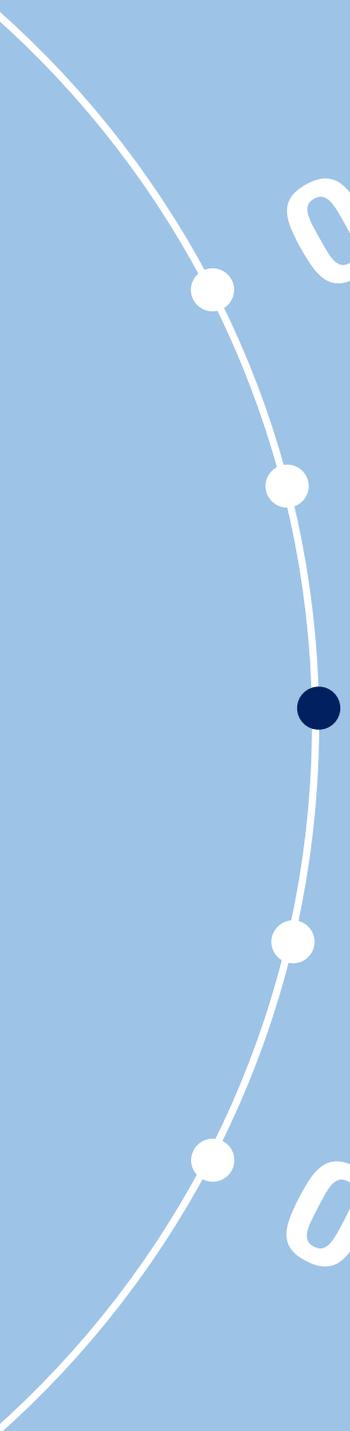
상담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형태(정규직)로 해당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며 현재 승선중인 선박 하선 후 동일한 사업장의 육상직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선원에서 육상직원으로 직종 변경 시에도 근속년수는 승계가 되므로 지금까지 선원으로 재직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수령하실지 여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까지 선원으로 재직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차후에 육상직원으로 퇴직을 하는 시점에, 선원으로 재직하 기간의 퇴직금 정산은 선원법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함을 확약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인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현재 DB(확정급여형)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육상직원으로 직종 변경 시 DB 또는 DC 선택은 가능하므로 두가지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DB(확정급여형)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매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확정기여형)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05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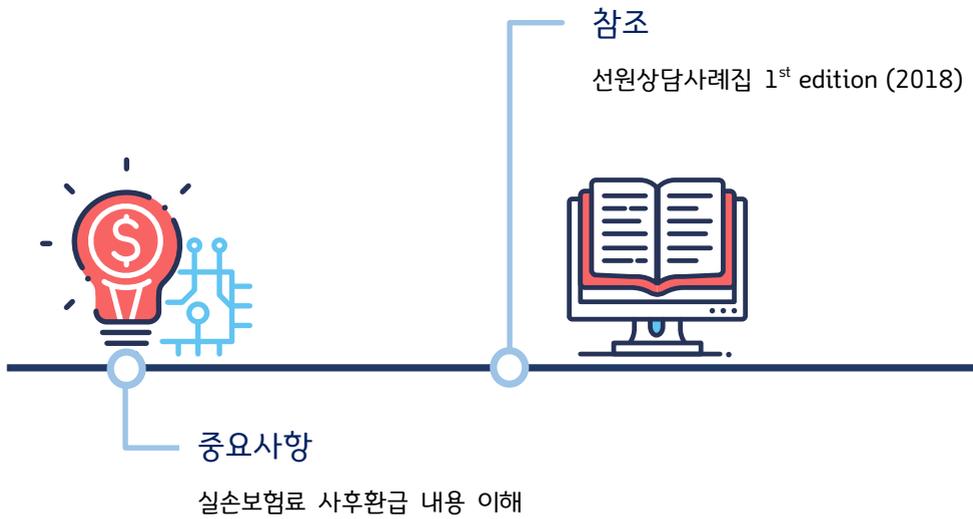
실손의료보험

07

08

# 1

## 실손보험료 환급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 개정내용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증지, 환급 제도 개선

보험제도,

‘의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준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무 가입임. 이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은 ‘민영보험’으로 보험 가입자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움.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 중 65%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이므로 개인들이 나머지인 35%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임.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함.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 국민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짐.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교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
관련법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보장범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를 보상하는 상품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5조)</li> <li>○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li> </ul>	임의가입
보장사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국민건강보험법 41조)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표준약관)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보장일수	제한 없음. 질병 완치시까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 : 발병일로부터 365일</li> <li>○ 통원 : 연간 180회</li> <li>○ 처방조제비 : 연간 180건</li> </ul>
보장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li> <li>○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제외</li> <li>○ 본인부담상한제(2019년도) - 당해년도 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81만원~580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적용)</li> </ul>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비급여 보상(2019년 3월 기준) - 본인부담금+비급여 금액 합계의 80~90% 보상 - 입원 :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처방조제비) : 회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 * 2017년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 등)을 별도 구매하는 상품으로 개편됨
계약갱신	평생 의무가입	1년 단위

## 실손보험료 (해외체류자, 선원) 납입중지·환급 제도 개선

### 현황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 운영 중.

- [사후환급]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 가능.
- [납입중지] 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과 실손의료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 문제

- [실적 미흡]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실제로 보험료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한 수준. 현행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는 방식은 가독성이 낮고, 계약자가 해외체류 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외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보험료 자동 환급은 곤란한 실정.
- [선원의 특수성] 선원의 경우 화물 운송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항(입국)하고 작업 후 출항(출국)하는 경우가 빈번 (2016년말 기준 35,685명)

### 개선

실적 미흡과 선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추진.

- ①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승하선 기록인정.

선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해양항만관청 발급)을 참고하여 해외체류기간 산정(국민건강보험은 선원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을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 ②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보험사는 실손보험(3개월이상)을 가입하고 실손보험료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2016.1.1.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체류(승무)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음을 개별 안내.

- ③ 자동문자 발송 등 안내강화

보험사는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 개선 추진일정

### 해외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 납입중지 제도 개선

개선방안	시행시기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승, 하선 기록' 인정	2019. 1. 1
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 청약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 안내	2019. 2월
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 청약 시 실손 보험료 납입중지 여부 선택	2019. 4. 1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2019. 2월

## 개정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14 및 별표15  
[시행2021.4.1][금융감독원세칙, 2020.10.16. 일부개정]

[별표14]

###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실손의료보험

#### 제4조(실손의료보험의 운영)

⑪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회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2017.3.22.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었으나 실적미흡과 선원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개선안내가 내려짐.

## 실손의료보험의 환급대상자 조건

### 1) 3개월 이상 연속체류

3개월을 한국으로 입국없이 쭉 해외에 체류한 경우.

선원은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승선, 하선 기록을 참고하여 해외체류기간 산정(선원의 경우에는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하고 작업 후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

### 2) 2009년8월1일 이후 보험 가입자

장기 해외체류 보험금 환급은 실비 보험 약관이 표준화된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 2009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자는 가입 항목에 따라 병원비의 일부만 지급이 되며,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 가능한 항목은 없음.

### 3)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실비) 환급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해외 출국 기록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2015년부터 2016년이후까지 해외에 쭉 체류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입국전날까지 계산되어 환급금액이 산정됨.

### 4) 입국일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험금 환급은 입국일로부터 3년이내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함. 입국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 적용이 되지 않음.

### 5) 해외 체류 기간내에 실손보험 수령이 없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내에 실손보험 보험금 수령 기록이 있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환급이 불가능함. 이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병원비와 실비보험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한국에 입국한 뒤에 환급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음.

## 실손의료보험 내용

### 정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임. 실손(實損)은 '실제 손실'이란 뜻으로 '의료실비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도 함.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구분하여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함.

### 연혁

#### ○ 실손의료보험 연혁



- 실손의료보험은 1963년 손해보험사가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국내 처음 도입한 이후 1977년 단체건강보험, 1978년 특약형태의 질병보험 등 의료 실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였으나, 단체건강보험은 1980년대 초손해율 급증으로 판매 중지함.

1999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중 본인부담분을 보상하는 의료비 보상보험을 판매. 생명보험회사는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제3분야(질병·상해·간병) 단체실손보험 취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3년 11월부터 단체의료비 실손보상보험을 판매함.

이후 2005년 8월 30일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제3보험 분야 개인 실손 보상보험 취급이 허용. 2009년 7월 22일 보험감독규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 3)되었으며, 2009년 9월 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2009.10.1. 시행)함.

### 특징

-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의 입·통원 시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 정액형 보험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상관없이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임.

구분	실손의료보험	정액형 보험
보험목적	실제 발생한 손해	질병, 재해 등
보상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	계약 시 약정된 금액
보상범위	보상하지 않는 항목 열거(포괄주의)	보상하는 항목 열거(열거주의)
중복(다수)보험	비례보상	각각 보상

# 상담내용

## 사실관계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무 중

## 용어파악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해외체류기간산정 #보험급여 정  
지기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중지 #납입중지 #환급  
#사후환급

## 질문

선박 승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인 선원들도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적용 대상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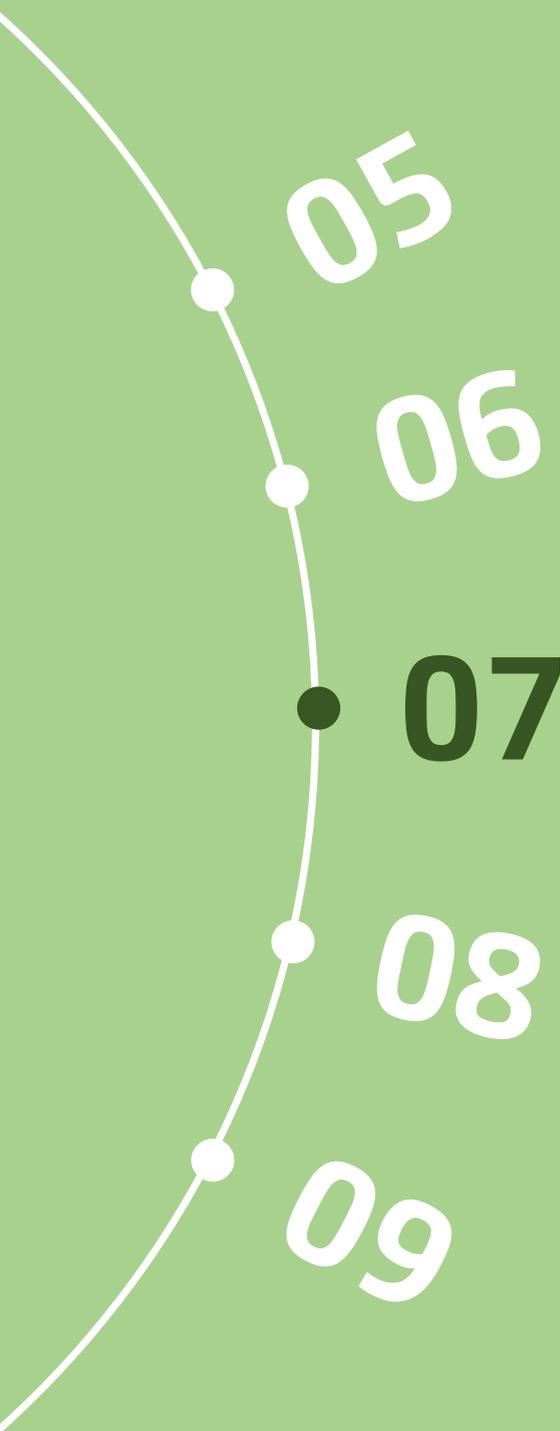
장기간 선박 승무를 위해 출항을 하였다가 잠깐 한국에 들렀다는 이유로 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했던 선원들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은 해외 승선 근무 선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외 장기체류자 환급제도 개선' 을 보험업계로 통보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원이나 해양항만관청의 승하선 기록을 제출한 선원이라면 실손 보험료 환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보험사들이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에 대한 실손보험료 환급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승무 기간 중 3개월 이내 시점에 한국항에 하루 또는 이틀간 일시적으로 접안한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귀국으로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는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공인기록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중간에 귀국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환급해줬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환급여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상담인은 3개월 이내에 선박 화물의 적양하를 위하여 선박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정박을 하였지만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이 '승,하선 기록'으로 2019.1.1일부 변경이 되었으므로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05

06

● 07

08

09

# 병역법

military service act

# 1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 중요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훈령 제1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해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191page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상담내용

초임사관으로 고용된 이후 승선일자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선박매각이 진행 중임. 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함.

## 관계법령

병역법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병역법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병역법 제23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제23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병역법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510호]



## 판례

대법원 2002.12.10. 선고2000다25910판결  
대법원 1993.9.10. 선고92다42897판결

# 중요사항

##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

해기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졸업 예정자들은 채용예정인 해운선사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졸업 후 선박에 승선 시 선원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채용내정'의 경우임. 상담인의 경우 또한 채용내정의 경우이므로 법적 지위 검토가 필요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복무, 이동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 복무, 이동에 해당하는 규정 확인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업체, 직무상 사망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그 외에도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진정을 할 수 있는 선원근로감독관과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음.

## 상담인의 현재 상황 파악

상담인은 학교 졸업전에 채용예정인 해운선사로부터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졸업 후 선박에 승선 시 선원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채용내정'의 경우임.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졸업전에 최종합격통보로부터 승선 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권리의 범위와 자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함.

채용내정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선원근로계약을 확인하여 상담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함. 상담인은 아래의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 중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계약설

근로관계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에 근거를 둔 견해임. 근로관계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합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에는 계약이 그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음.



### 편입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합의'라는 의사표시 이외에 '사업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사업 조직이나 사적인 생활영역에 편입되어야 실현단계에 들어간다고 주장함.



### 의사표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 최종합격통보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2.12.10. 선고2000다25910 판결]

##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개시험이나 추천 등을 통하여 채용예정자를 미리 선정·확정하고 일정한 시점(학교 졸업시점 등)에 정규사원으로 입사시키는 것을 말함. 채용예정자로 확정된 후 정규사원으로 입사하여 실제로 취업하기 이전의 지위에 있는 자를 채용내정자라고 함.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와 학생들도 조기에 취직처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맞아 떨어져 생긴 제도로 볼 수 있음.

**채용내정(취소)의 문제점** 채용내정은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확립된 제도이지만, 채용내정자의 입장에서는 채용내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게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됨.

**채용내정과 관련된 판례** 채용내정 후 1년 정도 발령을 내지 않다가 내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우석대학교사건 판결이 있음. [대법원 1993.9.10. 선고92다42897 판결]

**채용내정의 법적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자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보호에 관한 명문의 법률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됨. 즉, 채용내정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채용내정자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채용내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용내정자가 부당한 내정취소에 대하여 소송상 근로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됨.

**학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은 다양하나, 고용실태와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발전해 왔음. 초기단계에서는 채용내정을 단순한 채용과정의 절차에 불과한 사실행위로 파악하여 법적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채용내정의 실태가 사용자와 내정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또한 채용내정자의 보호라는 규범적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채용내정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학설이 발전하여 왔음. (학설 종류 : 근로계약체결과정설, 예약설, 채용내정계약설, 근로계약성립설, 정지조건부계약설, 해제조건부계약설, 효력시기부 해약권유보부계약설, 취업시기부 해약권유보부계약설)

**채용내정자의 법률관계** ①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 채용내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채용내정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 거치는 절차는 회사의 모집공고, 학생의 응모, 채용시험의 실시와 합격의 결정, 채용내정 통지, 채용통지서 등에 따른 서약서 제출과 건강진단의 실시, 졸업, 입사식 및 취업 등의 순서로 이루어 질 것임. 대부분의 판결과 학설의 다수설은 사용자의 근로자모집을 청약의 유인으로, 학생의 응모 및 수험을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사용자의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채용내정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문제 : 채용내정의 통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자의 근로제공의무와 기업의 임금지급의무의 현실적인 이행기는 취업 개시이후에 발생할 것임. 학설에 따라서 적용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조항(보고서 제출, 회사설명회 또는 연수 참석 등)은 채용내정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봄.

③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아직 취업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성질상 적용이 가능한 조항(근로조건의 명시, 휴업수당의 지급문제, 균등처우에 관한 조항, 위약예정금지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채용내정의 취소** 채용내정은 계약의 성립과 현실적인 취업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채용내정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채용내정통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게 되면 사용자에게 의한 일방적인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해고예고조항의 적용문제**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예고조항을 적용하여 취소하기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취업 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가 구체화되는 입사일 이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기간 중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반면에 채용내정에 의하여 취업시기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발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개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고예고제도가 반드시 근로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채용내정자의 사직** 채용내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채용내정자의 내정취소 또는 입사거부는 사직의 성격을 갖게 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해약의 자유가 인정이 되므로 내정취소도 적어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한 자유롭게 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학생측이 불합리한 해약 또는 부당한 의사를 가지고 입사거부를 하였다면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채용내정의 관행이 단시간 내에 소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채용내정의 취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더욱 더 많아지고 있음. 채용내정의 부당한 취소는 대학의 교육문제, 인력수급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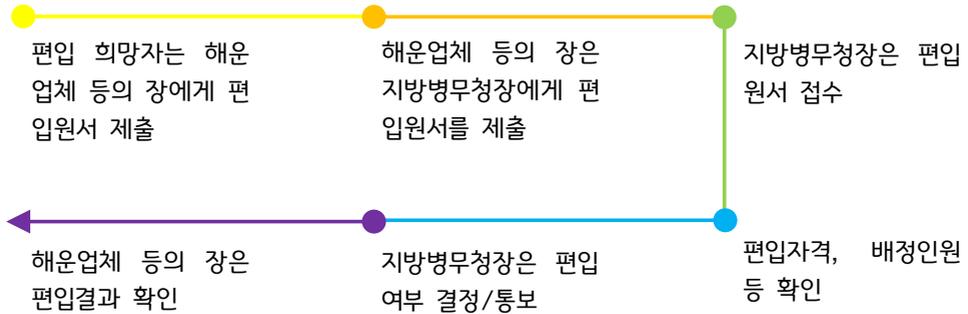
**판례** [대법원 1993.9.10. 선고 92다42897 판결]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사점** 채용내정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승소한 판례이므로 해고의 요건이 충족 되었으며 근로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상담인의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또는 지방병무청에게 문의를 해야 함.



### 편입대상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해기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중에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 (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 제출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 항해·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 [해운부문] 한국해양대학교(항해학부, 해사수송과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글로벌학부, 기관공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IT공학부), 목포해양대학교(항해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부산해사고등학교(항해과, 기관과), 인천해사고등학교(항해과, 기관과)
- [수산부문]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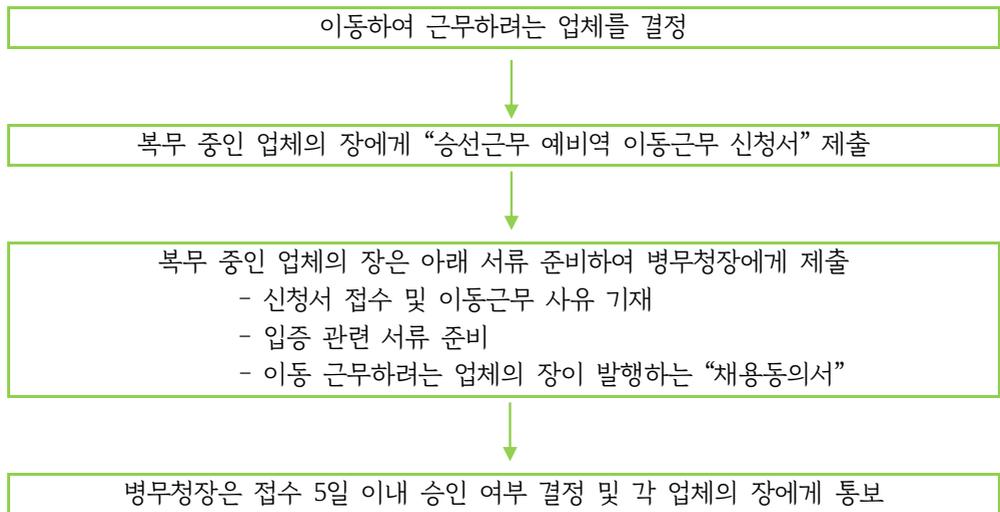
##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 이동근무 가능여부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가능(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 선박관리업체에 위탁) 하나,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의 T/O는 본인이 가지고 이동하는 의미이므로 이동하려는 업체와의 협의가 중요함. 만약 이동하게 되면 이동한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봄.

-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해운업체 장의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선박의 매각으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이동근무 절차



## 권익보호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업체, 직무상 사망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관리규정은 제정 목적상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운업체와 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 하므로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피해 당한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음. (상세 사항은 선원법위반신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1.01접속, [http://www.portbusan.go.kr/crew/crew\\_11\\_02.do](http://www.portbusan.go.kr/crew/crew_11_02.do) 참조)

# 상담내용

## 사실관계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할 해운회사가 정해짐. 졸업 이후에 회사로 부터 승선할 선박과 일자를 통보 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유를 들면서 승선을 여러차례 연기함.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선박 매각이 진행되고 있음.

## 용어파악

#선원근로체결조건 #계약설 #편입설 #의사표시 #최종합격통보여부 판례  
#채용내정 #해고예고조항 #훈령 #편입 #복무 #이동근무 #선원근로계약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 질문

취업의 문제와 함께 군대 문제(승선근무예비역)로 걱정이 많이 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승선근무예비역 부당한 대우 관련하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요.

상담인은 학교 졸업전에 채용예정인 해운선사로부터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졸업 후 선박에 승선 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내정’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졸업 전인 최종합격통보로부터 승선 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권리의 범위와 자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나, 대법원 판결(2002.12.10. 선고2000다25910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기의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상담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며 아래와 같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요건에 충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하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승선근무예비역의 T/O는 본인이 가지고 이동하므로 이동하려는 업체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 복무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해운업체 장의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선박의 매각으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규정이 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당한 위반 행위 신고는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 및 병무청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2

##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



### 중요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훈령 제1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해

### 참조

선원상담사례집 1<sup>st</sup> edition (2018)  
191page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상담내용

승선근무예비역들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권익이 쟁점화 되는 시점인데, 법 개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 관계법령

병역법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병역법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병역법 제23조의6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 [인원배정]



##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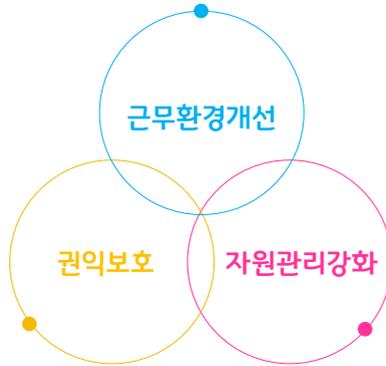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2021년말 병역법 시행규칙(서식) 개정안 마련

2022년 개정 추진

## 개정이유

개정에 대한 주요한 목적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자원관리 강화임.



## 개정내용

권익보호 명문화	근무환경 개선	업체 배정제한	휴가기간보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 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	선원법, 근로기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내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	유급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어려운 한 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개정 세부내용

### 인원배정 및 권익보호

-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4조, 신설).
- 병무청장은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설치된 선박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 받을 수 있고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제3조 및 제4조, 신설).

##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제한 강화(제4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1년간 배정을 제한하는 대상에 성폭력처벌법을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신설)
-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선박안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신설) 3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인원배정 시부터 적용
-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 1년간 배정제외(신설)

## 권익보호를 위한 이동근무 규정 신설(제10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정인원과 무관하게 이동근무 허용(신설)
- 직무상 사망사고 등 인원배정 제한된 업체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한 이동근무 제한(신설)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강화(제11조)

- 재승선 대기기간별 실태조사 대상에 군사교육소집이 종료되어 승선대기 중인 사람 포함

##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기준 마련(제11조의2)

- 해운업체등의 장은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신설)

##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순화 용어로 정비

- 허위통보 → 거짓통보, 명시하여 → 구체적으로 밝혀, 기타 → 그 밖에, 인사담당자 → 복무관리 담당자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내항, 외항 등 분야별 소요비용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① ----- ----- ----- 정하고, 승 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신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 ----- 이 경우 별도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은 「선박 안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인원 배정) ① (생략)	제4조(인원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인원배정을 할 경우 영 제40조의9 제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원배정을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 할 수 있다.	② ----- ----- 이 경우 「국제선박등 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 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할 수 있으 며,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 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인원배정 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복무관리 부실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복무관리 부실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1년	2. ----- -----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 ----- 업체(이 경우 해운업 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근로기 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
3.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로 고발된 업체: 2년	3. ----- 거짓통보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 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로 이 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에서 인원 배정을 제외한다.
<신 설>	9.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선박안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한
<신 설>	10.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영구 배정제의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u>잔여</u>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u>잔여</u>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u>남아 있는</u> -----, ----- ----- <u>남아 있는</u> -----.
⑤ 해운업체 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u>잔여</u>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잔여 배정인원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업체에 취업한 사람(취업 약정한 사람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u>잔여</u>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⑤ ----- -- <u>남아 있는</u> ----- <u>남아 있는</u> - ----- ----- <u>해당 업체</u> ----- ----- <u>남아 있는</u> ----- -----.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운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등 <u>해당업체</u>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 ----- <u>해당 업체</u> ----- --.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체 등의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u>해당연도</u> 10월 10일까지	1. ----- <u>해당 연도</u> -----
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u>다음연도</u> 1월 10일까지	2. ----- <u>다음 연도</u> -----
제5조(배정 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해운업체등별로 인원배정을 한 후에 영 제40조의4제2항에 의한 이동근무, 해운업체 등의 채용계획 변경 또는 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해당업체</u> 의 남은 배정인원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배정 조정) ① ----- ----- ----- <u>해당 업체</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 ① (생략)	제7조(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u>해당연도</u> 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 ----- <u>해당 연도</u> -----.
제8조(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u>관련법령</u>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근로권의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 ① ----- ----- <u>관련 법령</u> -----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u>교육일</u> 로부터 7일전까지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② ----- ----- <u>교육일</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 ③ (생략)	제8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해운·수산업체, 해양항만관청 등 <u>유관기관</u>과 협조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 ----- ----- <u>유관 기관</u> ----- --.</p>
<p>⑤ (생략) 제10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① 영 제40조의4제3항제5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u>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근무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 중인 업체에는 승선근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선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① ----- ----- <u>다음</u> ----- ----- <u>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인 업체에서</u> ----- - <u>없는</u> -----.</p>
<p>1. ~ 3. (생략) <u>&lt;신 설&gt;</u></p>	<p>1. ~ 3. (현행과 같음) 4.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p>
<p>② ~ ⑤ (생략) <u>&lt;신 설&gt;</u></p>	<p>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동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이동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발된 업체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업체</p>
<p>⑥ (생략) 제11조(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 ④ (생략)</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1조(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해운업체등의 장은 <u>승선근무예비역이</u> 하선하여 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나 <u>재승선하지 않은 경우에는</u> 재승선 대기기간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실태 조사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업체등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⑤ ----- <u>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또는</u> ----- <u>승선 또는 재승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선 또는</u> ----- -----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⑥ (생략) <u>&lt;신 설&gt;</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제24조에 따라 승선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하선하여 유급휴가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해당 연도의 군사교육소집 일정이 종료된 경우 등을 말한다.</p>	<p>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이제1항의 기한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시키지 않고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한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3개월 미만: 시정 2. 3개월 이상: 주의 3. 3개월 이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를 유발한 업체: 재정제한 대상업체로 병무청장에게 보고</p>
<p>제12조(복무 관련서류의 관리)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무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복무 관련서류의 관리) ----- ----- -----.</p>
<p>1. ~ 3. (생략) 4. 신상변동 통보 관련서류 등 <u>기타</u> 복무관리 관련서류</p>	<p>1. ~ 3. (현행과 같음) 4. ----- <u>그 밖에</u> -----</p>



# 상답내용

## 사실관계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기간이며 해당사업장에서 1년간 재직 중.

## 개정내용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병역법과 하위법령임. 그 중에서 병역법 시행규칙과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이 개정 예정.

##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법 개정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및 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병역법 시행규칙과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이 개정 예정입니다. 첫째,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 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하는 것이며 둘째,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 하는 것과 셋째, 선원법, 근로기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내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을 제외시키는 것과 넷째, 유급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어려운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현,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25개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선원이 가장 존경받는 사회 구현을 최우선과제로, 선원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확립, 선원들의 고충처리 및 해기전승의 기틀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운산업 등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원들의 든든한 동행자이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는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리확보



해기전승



고충처리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20 (마린페어3층)

TEL) 051-464-7701, 7706 FAX) 051-464-7705

<https://www.aksu.or.kr>

고려해운(주)해상연합노동조합  
남성연합노동조합  
두양연합해운노동조합  
삼표시멘트해운선원노동조합  
쌍용양회공업(주)선원노동조합  
중앙상선노동조합  
코리아씨페어러스연합노동조합  
HMM(주)해원노동조합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국적선해운노동조합  
동진상선노동조합  
부산예부선노동조합  
신성해원연합노동조합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천경해운(주)노동조합  
(주)한유연합노동조합  
KMI해상연합노동조합

금양상선노동조합  
동아탱커(주)선원노동조합  
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  
씨앤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태영연합노동조합  
흥아연합노동조합  
SK해운연합노동조합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추진사업



### 장학사업

각 선사 또는 노동조합의 선원 자녀들 중 부모에 대한 효성이 깊고 사회질서를 준수하며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산하 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

해상근로자의 특수한 직업환경을 고려하여 선원들의 법률적 고충에 대해 변호사 연계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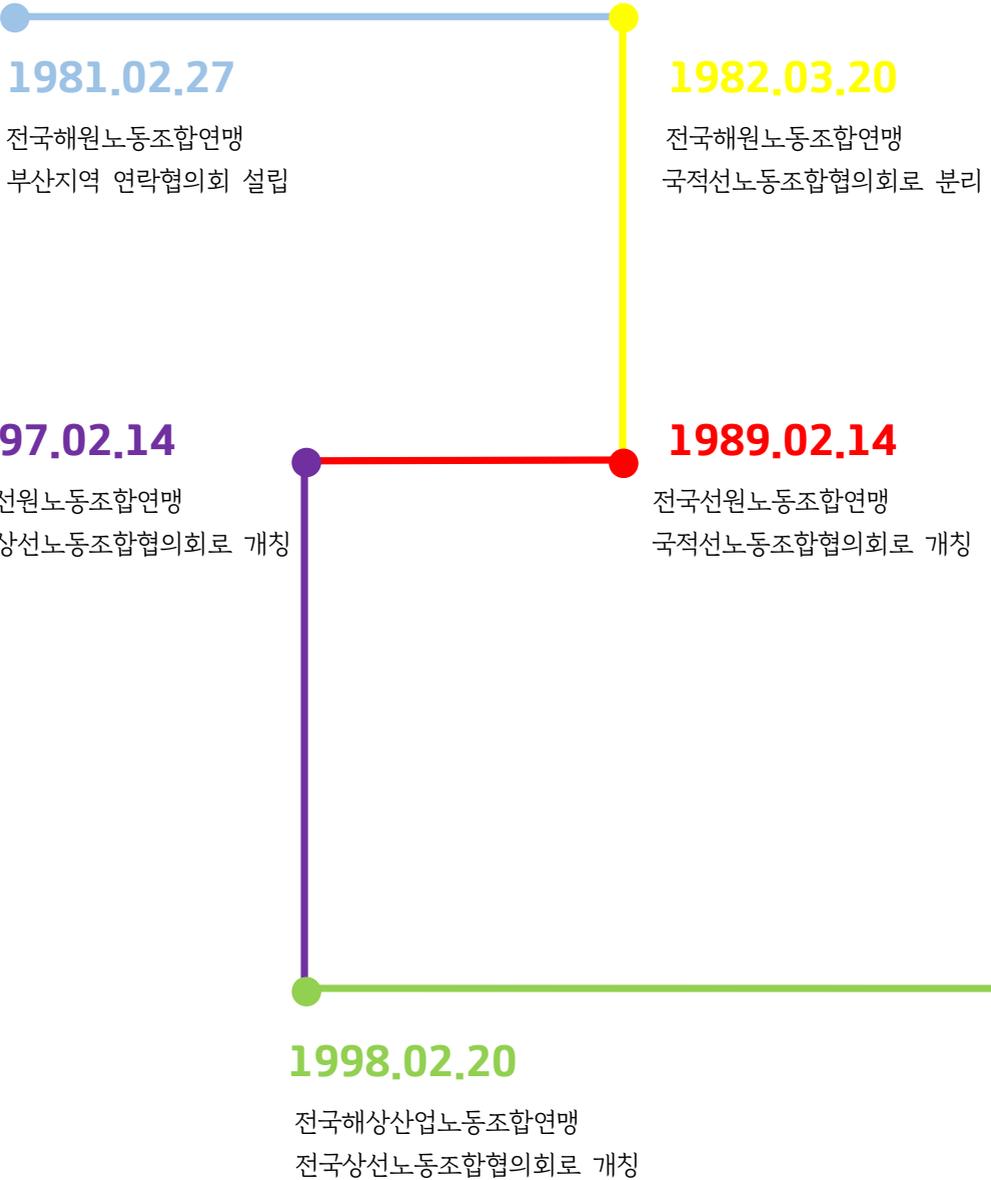
모범선원 표창, 행복나눔 행사, 경조사 화환 지원, 선원의 고충처리 지원, 선원 자질 향상 교육비지원,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상병 선원 문병활동 및 격려금 지원, 내/외국인 선원 노동절 기념 선물 지원, 근로관계 및 상병등의 분쟁에 대한 지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 대한 상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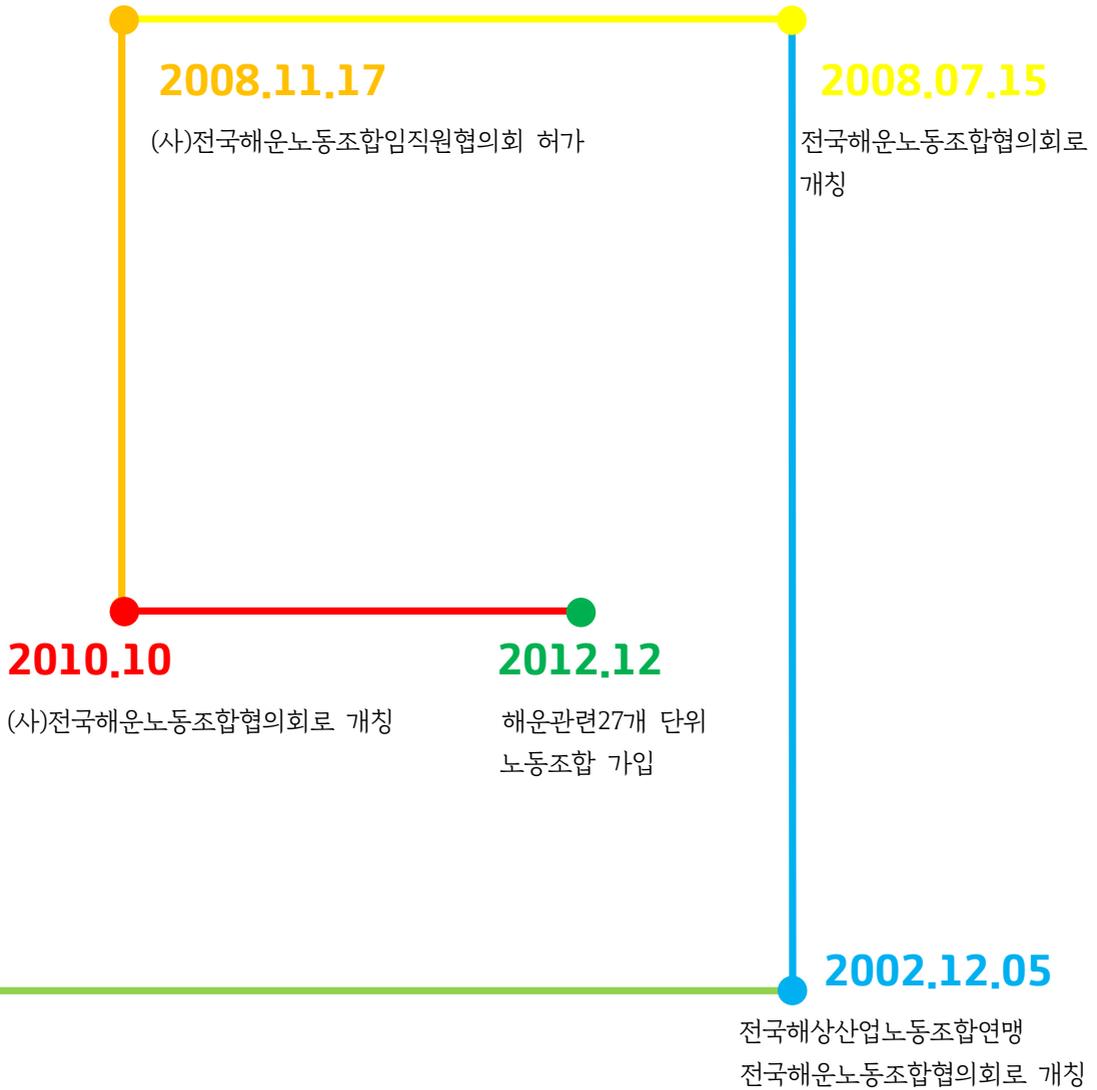


### 정책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선원직업 알리기 홍보, 학술대회 참여 및 후원, 선원관련사건판례집 발간, 예비해기사 활동물품 후원,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지원, 전문서적 번역 및 고찰(분석)서 발간, 선박에 선거 관련 동영상 및 홍보 지원, UCC & PHOTO Contest of The life of Seafarer 공모전, 선원의 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해기 인력 양성지원사업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연혁





#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산업재해조사/심사/조정 업무지원

해사관련 도서 대여

송사 업무지원

고충 및 법률 관련 상담

CPR/AED 사용법 강의,실습지원

T 051-714-3545 / F 0504-317-9609

부산광역시 중구 총장대로 13번길20,마린페어 3층

---

**박상익**

한국해양대학교 졸업  
현) SK해운 항해사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  
현)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변론인  
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겸임교수  
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장

010-2575-3937 / 705slop@naver.com

---



**이요한**

한국해양대학교 졸업  
현) 코리아씨페어리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겸임교수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래강사  
현)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단장  
전) 한진해운 항해사

010-6675-9609 / crew128@naver.com

---

**김중엽**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현) SK해운(주) 항해사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조직부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국해양대학교 시간강사

010-8318-2804 / star05277@nate.com

---

법무법인 **해마루**  
HAEMARU LAW FIRM

해마루 : 해가 뜨는 산마루  
(법무법인 최초 한글 상호)



T 02-536-5437 / F 02-536-543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T 031-410-2300 / F 031-410-296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102호, 202호



**윤중현 변호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현) 안산단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현) 안산 YMCA 감사
-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현) 반월농업협동조합 사외이사
- 전) 안산 YMCA 여성과 성상담소 실행위원

노동법 (임금, 산업재해)  
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  
행정법 (안산시, 시흥시 관련 자문/소송)  
건설, 재건축, 재개발법 (조합자문/소송, PF자문/소송)  
형사소송

# 法務法人 청지

Law firm cheong ji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는  
믿을 수 있는 당신의 파트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23 금석빌딩2층 (서초동)

tel.02-587-8090 / fax.02-587-8095

kluzmirae@naver.com



---

## 유동승 변호사

- 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주)케이비손해보험 고문변호사
  - 현) (주)한진관광 고문변호사
  - 현)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현)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전문자문위원
  -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고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 현) 해양경찰청 정부포상공적 심사위원
  
  - 전)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 도움드리는...

산재보상  
노인용양기관 컨설팅  
급여·인사관리(아웃소싱)

### 우리는...

열정이 있는 삶을 추구  
끈기 있는 삶을 추구  
평생 학습하고 연구하는 삶을 추구  
지문조 / 김용두 / 황미나

### 연락처...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9-13  
동훈빌딩(건강보험공단건물) 6층  
T 051-322-5175  
F 051-505-5173



---

### 지문조 노무사

- 현) 노무법인 해마루 대표
- 현) (사)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
- 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백두 공동대표
- 전) 법무법인 한울 재직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 전)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노사발전재단 노무관리 개선 컨설팅사업 컨설턴트

---

### 황미나 노무사

- 현) 노무법인 해마루 재직
- 현)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컨설턴트
- 전) 고용노동부 국선 공인노무사
- 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국선 공인노무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업주를 위한 근로기준법 강의  
공단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강의 다수  
노동조합 강의 다수  
시간선택제일자리 컨설팅 수행  
체불임금, 해고사건, 산재사건 대리

---



##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상담인

### 박상익

한국해양대학교 졸업  
현) SK해운 항해사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  
현)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변론인  
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겸임교수  
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장

010-2575-3937 / 705slop@naver.com

### 이요한

한국해양대학교 졸업  
현) 코리아씨페어러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겸임교수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래강사  
현)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단장  
전) 한진해운 항해사

010-6675-9609 / crew128@naver.com

### 김종엽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현) SK해운(주) 항해사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조직부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국해양대학교 시간강사

010-8318-2804 / star05277@nate.com



## 감수자 약력

###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변론인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051-410-4232 / shpark@kmou.ac.kr

### 진호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특임교수  
현) 한국해사법학회 연구이사  
전) 국제노동기구 제3차 삼자특별위원회 대표단(정부대표)  
전) 국제노동기구 해양교통분과 위원회 대표단(자문단)  
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전문파견관  
전)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 시간강사

010-9207-5775 / hhjin@seaman.or.kr

### 윤중현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현) 안산단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현) 안산 YMCA 감사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현) 반월농업협동조합 사외이사

T. 02-536-5437 / F. 02-536-5439

### 유동승

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주)케이비손해보험 고문변호사  
현) (주)한진관광 고문변호사  
현)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고문변호사  
현) 해양경찰청 정부포상공적 심사위원

T. 02-587-8090 / F. 02-587-8095



## 자문단

(가나다순)

### 김성주

현) 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위원회 위원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이사

051-460-7092

### 두근혁

현)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총무부장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팀장  
 현) 에이치라인해운 1등항해사

051-793-1922

### 윤인규

현)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수석부의장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의장

051-469-9666

### 최종택

현) KMI해상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이사

051-793-1922

### 황태욱

현) 중앙상선노동조합 위원장  
 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감사  
 전) 중앙상선 1등기관사

051-253-3457





발행일 : 2020.12 초판인쇄 / 발행처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본 연구자료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20,마린페어3층  
 051-464-7701  
 051-464-7705  
 705slop@naver.com

###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20,마린페어3층  
 051-714-3545  
 0504-317-9609  
 crew128@naver.com





# 선원상담사례집

## 2nd edition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비매품/무료

13060

9 791196 854621

ISBN 979-11-968546-2-1